

2016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지표

2016년 5월

2016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지표 설명회 일정

○ 일시 : 2016. 5. 23(월) 14:00~16:15

○ 장소 : 서울시립보라매청소년수련관

○ 프로그램 일정표

시 간	행사	소요 시간	내 용	장 소
13:30~14:00	등 록		- 등 록	
14:00~14:20	평가개요	20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경준 박사	
14:20~15:20	평가지표 설명	60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모상현 박사 · 청소년수련원 평가지표 설명 · 유스호스텔 평가지표 설명 · 청소년야영장 평가지표 설명	
15:20~15:30	휴식	10분	음료 및 다과	사회: 정은주 박사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
15:30~16:15	질의응답	45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경준 박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모상현 박사	
16:15	폐 회			

목 차

1. 2016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개요	1
2. 2016년 청소년수련원 종합평가 지표	8
3. 2016년 유스호스텔 종합평가 지표	35
4. 2016년 청소년야영장 종합평가 지표	70

1. 2016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개요

1) 평가 목적

-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야영장)의 운영형태를 파악하여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한 제반시설, 프로그램, 조직·인력 등이 제대로 갖추어져 운영하고 있는지 종합평가 실시
- 평가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개선 유도

2) 평가 추진방향

- 현재 설치·운영 중인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야영장에 대한 종합평가가 실시
- 해당 평가시설을 대상으로 평가지표에 대한 의견수렴 및 평가지표 확정
-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결과에 대하여는 1차 개별 통지 후, 이의 사항에 대한 재심의 과정을 거친 후 최종 확정

3) 평가대상 기관 및 기간

○ 평가대상 시설 : 총 316개소

- 청소년수련원 170개소, 유스호스텔 109개소, 청소년야영장 37개소

* 당초 평가대상 358개소('14.12.31기준) 중 50개소는 제외(폐지 13, 휴지 37), 시설종류변경(수련관→수련원) 8개소는 추가

구분	당초	점검제외			추가 (시설종류변경)	최종
		소계	폐지	휴지		
합계	358	50	13	37	8	316
청소년수련원	191	29	8	21	8	170
유스호스텔	125	16	4	12	-	109
청소년야영장	42	5	1	4	-	37

- 평가대상 제외시설

1. 수련시설 등록이 최소 1년 이상인 시설을 대상으로 함
2. 평가시점에서 휴·폐지 시설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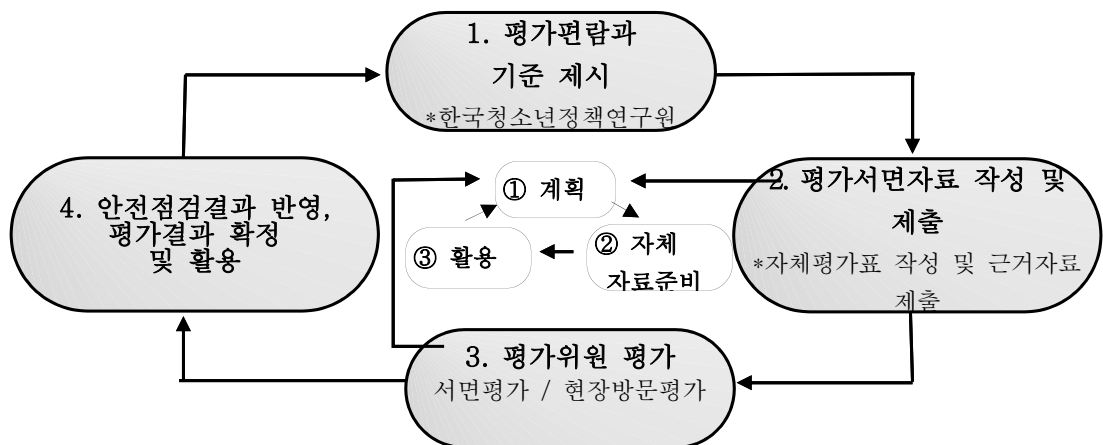
- 소명평가 실시 : 평가결과 미흡이하 시설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소명평가 실시하며, 소명평가지 평가비용은 피평가자 부담

○ 평가대상 기간

- 2014년 ~ 2015년(1월 1일 - 12월 31일). 일부지표는 3년간 자료 포함

4) 평가모형 및 추진체계

○ 평가모형도



[그림 1] 2016년 청소년수련시설 평가모형도

○ 평가추진체계

구 분	주요 역할
여성가족부	○ 평가업무의 총괄 및 지원 ○ 평가결과의 활용 및 정책 반영 ○ 평가결과에 대한 교육부 등에 통지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 평가 계획 수립 ○ 평가 진행 및 평가결과 보고
평가지표 개발 자문위원회	○ 기존 평가지표 분석 ○ 평가지표 개발(수정 및 보완)
평가위원회	○ 평가지표 확정 ○ 평가자료 서면평가 및 현장 방문 평가 ○ 평가결과 확정 및 결과서 작성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야영장	○ 자체평가표 작성 및 근거자료 제출
시·도 시·군·구	○ 평가결과 활용 및 정책 반영

5) 평가단계와 절차

○ 주요 단계 및 일정

평가준비 단계	세부계획 수립, 평가지표의 개발	2016. 3~4	· 지표개발 TF 구성 및 평가지표 검토 · 기존 평가지표 현장의견수렴 · 평가지표 초안 구성
	사업설명회 개최 및 평가위원회 구성	2016. 4~5	· 평가편람 개발 ·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위원 워크숍 · 설명회 개최, 평가지표 최종 선정 및 통보
평가실시 단계	자체평가표 작성·제출	2016. 5~6	· 자체평가표 및 자료 제출 - 평가대상자 작성·제출 - 자체평가표 미제출 시설 평가거부 처리
	서면평가 실시	2016. 6	· 평가위원회 서면평가 실시 - 평가대상 시설별 서면조사표 심사
	현장평가 실시	2016. 7~8	· 현장평가 실시
	평가결과 정리 및 확정	2016.9~11	· 평가결과 개별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 이의신청 심의 및 반영 · 종합 안전점검 결과 반영
평가결과 분석 및 정리 단계	종합평가 결과 공표	2016. 12	· 교육부, 지자체 통보 · 평가결과 일반 공개(여가부, 활동정보서비스)
	평가보고서 작성	2016. 12	· 평가 후속조치 · 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 전체 평가단계 및 일정

- ① 1 단계 : 평가편람 확정 및 통보
- ② 2 단계 : 평가 대상 시설 자체평가표 작성 및 관련 자료 제출
- ③ 3 단계 : 평가위원회 서면평가
- ④ 4 단계 : 현장방문 평가
- ⑤ 5 단계 : 평가결과 종합 및 이의제기 처리
- ⑥ 6 단계 : 안전점검결과 반영
- ⑦ 7 단계 : 평가결과 확정·정책반영

① 1 단계 : 평가편람 확정 및 통보

-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지표 개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지표(안)를 개발하고, 개발된 평가지표(안)에 대한 현장의견을 수렴,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 평가위원회는 확정된 평가지표를 토대로 평가지표와 절차 등이 명시된 평가편람을 확정하고, 각 청소년수련시설에 배포하여 평가 준비
- 평가편람의 내용에는 평가사업의 목적, 추진체계, 평가분야, 평가지표, 평가준비 일정 등 포함

② 2 단계 : 시설별 자체평가표 작성 및 근거 자료 제출

- 개별 청소년수련시설은 평가편람에 수록된 지침과 기준 등을 참고로 자체적으로 작성한 자체평가표를 작성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평가위원회에 제출
- 자체평가표 내용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불분명하거나 오류가 있는 자료에 대한 수정은 가능

③ 3 단계 : 평가위원회 제출자료 서면평가 실시

- 평가위원회는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제출한 자체평가표와 근거서류를 토

대로 서면평가 실시

④ 4 단계 : 현장방문 평가

- 현장방문 평가는 제출된 자체평가표의 사실 여부 확인과 서면평가로 확인하기 어려운 항목을 확인하는 순서로 진행
- 현장방문 평가의 절차는 ① 시설대표자 및 운영대표자 면담, ② 시설 현황 브리핑, ③ 평가 실시, ④ 평가결과 확인 등의 순서로 진행
- 현장방문평가는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준비한 자료에 기초하여 실시하며, 보충자료를 확인할 수 있고, 필요시 직원에 대한 면접 수행
- 현장방문 평가시 평가대상 기관에서 평가위원에게 금전, 향응(식사대접, 지역특산물 제공 등) 등 접대행위를 시도하거나 시행할 경우에 종합평점에서 감점 처리

⑤ 5 단계 : 평가결과 정리 및 이의제기 처리

- 평가위원은 현장방문 평가 종료 후 즉시 평가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제출
- 현장방문 평가결과를 지표별 산출 공식을 이용하여 자료 작성
- 평가위원회는 일정한 절차와 합의과정을 거쳐 평가결과를 정리하여 그 결과를 개별 청소년수련시설에 통보
- 평가결과에 대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의 신청이 있을 시에는 이를 접수받아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처리

⑥ 6 단계 : 종합안전점검과 연계

- 6개 점검분야(건축·토목·기계·소방·전기·가스) 중 1개 분야라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은 '종합평가' 등급 부여시 미흡이하*로 조정
- * 1개 분야 부적합 : 미흡 등급, 2개 분야 이상 부적합 : 매우미흡 등급
- 1차 안전점검 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은 종합평가 종료이전 (~'16.11월)에 개선조치하고 해당분야 점검기관에 재점검을 요청하여 개선이 확인된 경우 '적합'으로 인정
- 부적합 판정시설 중 개선에 상당한 기간과 예산이 소요되어 종합평가

종료이전에 개선이 어려운 시설의 경우에도 해당분야 점검기관에서 재 점검을 통하여 개선이 확인('17.1월~6월)된 경우 등급 조정

⑦ 7단계 : 평가결과 확정 및 보고

- 평가위원회는 최종 평가결과를 확정하여 여성가족부에 통보
- 평가위원회는 개별 청소년수련시설 평가결과를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여성가족부에 제출

4) 최종 평가결과 확정 및 활용방안

- 관계기관에 종합평가 결과 통보 및 공개
 - (여가부) 교육부·지자체에 평가결과 통보 및 공개(홈페이지,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 평가거부 시설명도 공개
 - (교육부) 수학여행·수련활동 시 종합평가 결과 활용
 - (지자체) 운영 미흡사항 확인 및 개선 시정조치
- 평가거부 시설에 대한 조치
 - (여가부) 평가결과 통보 및 공개시 거부시설임을 명시, 정부지원 사업대상에서 배제
 - (교육부) 학교대상 프로그램 참여 제한(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
 - (지자체) 시설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별도의 지도점검 실시
 - * 휴지시설은 운영 재개(再開) 시 1주일 이내에 지도점검 실시
- 최우수등급 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여가부)
 - 최우수등급 시설 인증 표식 게시(2년간), 공모사업 참여시 우선 혜택 부여
 - 장관상 시상 및 종사자 해외연수 기회 제공* 등
 - * 예산 등을 고려하여 최우수 등급 시설 중에서 선정
- 미흡·매우미흡 등급 시설에 대한 조치
 - (여가부) 활동프로그램 공모 등 각종 정부지원 사업대상에서 배제
 - (지자체) 미흡사항 개선조치 요구·이행상황 관리

2. 2016년 청소년수련원 종합평가 지표

1) 지표체계 : 5개 영역 - 9개 항목 - 25개 평가지표

2) 배점기준 : 총점 100점 만점

평가 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항목	배점	평가지표	평점 만점	가중치	배점
1. 운영 및 관리체계 (10점)	1.1 기관 운영계획	3	1.1.1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여부	5	× 0.2	2→1
			1.1.2 연간 운영계획 수립 여부	5	× 0.4	2
	1.2 기관 운영체계	7	1.2.1 운영규정의 관리 수준	5	× 0.2	1
			1.2.2 회계 관리의 체계성	5	× 0.8	2→4
			1.2.3 시설의 홍보 수준	5	× 0.4	1→2
2.청소년 및 프로그램 (18점)	2.1 청소년 이용	8	2.1.1 전체이용자 대비 청소년이용률	5	× 0.6	5→3
			2.1.2 청소년의 안전관리	5	× 1.0	5
	2.2 프로그램 운영	10	2.2.1 청소년수련활동 단위프로그램 매뉴얼 구비여부	5	× 1.0	5
			2.2.2 청소년수련활동 운영관리	5	× 1.0	5
3. 인사 및 조직 (24점)	3.1 직원 확보	11	3.1.1 직원 확보의 수준	5	× 0.2	3→1
			3.1.2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준수	5	× 1.0	5
			3.1.3 운영대표자의 자격기준 준수	5	× 1.0	5
	3.2 직원 교육 및 복지	13	3.2.1 직무연수 참여자 비율	5	× 1.0	3→5
			3.2.2 직원의 성범죄 경력 확인 여부	5	× 1.0	5
			3.2.3 직원의 복리후생	5	× 0.6	3
4. 시설 및 안전 (38점)	4.1 시설환경	10	4.1.1 시설기준	5	× 1	5
			4.1.2 생활관의 쾌적성	5	× 0.8	4→5
	4.2 안전관리	28	4.2.1 안전관리계획 수립의 체계성	5	× 0.8	4→5
			4.2.2 직원의 안전교육 실시	5	× 1.0	5
			4.2.3 직원의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5	× 1.0	5
			4.2.4 자체안전점검 실시 및 지방자치단체장 보고	5	× 1.0	5
			4.2.5 집단급식소 관리의 적절성	5	× 0.6	5→3
			4.2.6 시설배상책임보험 가입	5	× 1.0	5
5. 종합평가 (10점)	5.1 종합평가	10	5.1.1 전반적인 발전 노력 수준	5	× 1.0	5
			5.1.2 종합평가	5	× 1.0	5
합 계						100

※ 진한 글씨(붉은색)로 표기된 내용은 2014년 대비 수정된 사항임.

3) 청소년수련원 평가지표별 평가방향 및 기준

1	운영 및 관리체계			
평가항목	1.1 기관 운영계획			
평가지표	1.1.1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여부			
평가방향	청소년수련원은 자연과 더불어 행하는 수련활동의 청소년전용시설로서 설립 취지를 실현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 2015년 12월 기준 최근(5년 내)에 수립된 계획서			
평정기준	• 총점 : 점			
평가요소	요소항목	평정기준		○ 판정 시 배점
	1)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 보유하고 있다	×	○	1점
	2) 분야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	○	1점
	3) 특성화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	○	1점
	4) 예산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	○	1점
	5) 연도별 추진 일정을 수립하고 있다	×	○	1점
	총점 =		점	
평가내용	• 평가의 중점 사항 - 중·장기 발전계획은 세부사업에 대한 추진방안의 평가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장기적인 발전목표를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계획을 추진하는지 종합적 관점에서 평가함 - 자연권 청소년수련활동 전용시설로서 청소년수련원의 정체성 및 기능 강화를 위한 노력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함 - 특성화프로그램 개발 및 발굴을 위한 노력을 중심으로 특성화수련활동장으로서의 변화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수립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여부 - 학교단체 수련활동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학교단위 일일현장 체험과 주말 가족단위 체험활동 등 다양한 활동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 ※ 어떤 형태나 수준이든지 인정하고 요소별 평가 • 중·장기발전계획의 개념 - 청소년수련원이 중장기 기간(평균 3년 또는 5년 정도, 위탁기간 등)동안 이루고자하는 목표나 방향, 사업 및 기관 경영 등 분야별 추진계획을 문서화한 것을 의미함 - 중·장기 기간 동안 각 기관별 운영기반과 지역사회 및 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성취하려는 목표와 전략, 분야별 계획, 단계별 추진방안을 포함하여 작성함 • 평가 자료의 범위 - 공식적인 내부결재 또는 공식 발표 등 해당 수련원의 발전계획으로 공인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친 공식 계획서를 평가 대상으로 함. - 수립 시점 및 적용기간의 범위 : 2015년 12월 이전에 수립된 계획서를 기준으로 함. * 단, 청소년수련원의 발전계획 기간이 2015년 12월로 종료되어 2016년 이후 기간을 대상으로 새로운 발전계획을 수립한 경우 평가 자료로 인정 가능 - 평가 대상 기간 중 위탁기관이 변경된 경우는 변경된 기관의 계획서로 평가 가능 - 위탁시설의 경우 수탁제안서에 포함된 중장기발전계획도 인정 - 직영시설의 경우 지자체 자체의 정책계획과 별도로 해당 시설별로 수립된 독립적인 발전계획서를 평가의 대상으로 함 ※ 점수배점을 2점->1점으로 하향조정			
평가자료	청소년수련원 (중·장기)발전계획서			

평가 항목	1.1 기관 운영계획				
평가 지표	1.1.2 연간 운영계획 수립 여부				
평가 방향	청소년수련원은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연간단위로 청소년수련활동사업 및 시설관리, 경영관리 등 기관 운영 전반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평가 기간	• 2014년, 2015년 연간 운영계획				
평정 기준	• 총점 : 점				
평가 요소	요소항목			평정기준	○ 판정 시 배점
	1)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보유하고 있다			X ○	3점
	2) 세부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X ○	1점
	3) 예산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X ○	1점
	총점 =			점	
평가 내용	• 평가의 중점 사항				
	- 중장기발전계획을 기반으로 독립된 연간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야 함. 이때 연간단위 운영계획은 당해 연도의 목표와 중점방향을 설정하고 전년도 평가결과와 수요자 참여 등을 토대로 체계적이며 시의성 있는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함				
	- 자연권 수련활동에 적합한 청소년수련원의 기능수행과 관련된 목표, 계획 내용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				
	※ 어떠한 형태나 수준이든지 인정하고 요소별로 평가				
평가 내용	• 연간 청소년수련원 운영계획의 개념				
	- 기관별 운영기반과 지역사회 및 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1년간 성취할 목표와 구체적인 추진내용, 분기별 또는 월별 운영계획과 기대효과를 포함하는 문서를 말함				
	- 프로그램을 포함한 시설관리, 조직, 재무, 홍보 등 수련원 운영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포함하는 기관 전체의 운영계획으로 계획서의 완성도를 확인함				
	• 평가 자료의 범위				
평가 내용	- 수련원 자체적으로 내부결재를 통해 수립한 공식적인 계획서를 대상으로 함				
	- 위탁 시설의 경우 지자체에 제출하는 공식적인 연간운영계획서를 기준으로 함				
	* 단, 지자체 요구 양식에 따라 제출한 연간운영계획 보다 내부적으로 별도로 수립한 계획이 상세할 경우 내부 자료를 평가에 활용함.				
	- 평가기간 중 운영기관이 변경된 경우는 변경된 기관의 계획을 대상으로 평가 가능				
평가 자료	평가시점 기준 전년도와 해당연도(2014, 2015) 청소년수련원 운영계획서				

평가 항목	1.2 기관 운영체계	
평가 지표	1.2.1 운영규정의 관리 수준	
평가 방향	청소년수련원은 시설운영에 필수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으로 제정하여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체계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규정을 제정·관리해야 한다.	
평가 기간	•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정된 제규정	
평정 기준	매우우수(5)	6개 이상 규정 보유
	우 수(4)	5개 규정 보유
	보 통(3)	4개 규정 보유
	미 흡(2)	3개 규정 보유
	매우미흡(1)	2개 이하 규정 보유
평가 요소	• 관련규정의 유형 ①취업규칙, ②직제규정, ③인사관리규정, ④보수규정, ⑤복무규정, ⑥복리후생관리 규정, ⑦회계 및 예산규정, ⑧사무(문서)관리규정, ⑨위임전결규정, ⑩여비규정, ⑪계 약직관리규정, ⑫물품(비품)관리규정, ⑬시설관리규정, ⑭기타 등	
평가 내용	• 평가의 중점 사항 - 청소년전용시설의 공공기관으로서 위상과 관련하여 가장 기본적인 요건에 해당하는 운영규정 관리의 확인을 통해 제도적인 운영시스템의 구비 여부를 평가함 • 운영규정 범위 - 정관, 직제, 인사, 보수, 복무, 회계, 시설관리, 안전관리, 문서관리 등 청소년수련원 운영에 관련된 제반 업무 규정을 대상으로 함 - 개별 규정이 없이 전체 내용을 회칙 수준으로 간단하게 작성한 경우 2점 이하 부여 * <u>취업규칙(관할노동관서에 신고된 것 만 인정)</u> 작성 보유 시 인사, 보수, 복무, 복리규 정 보유 인정 • 시설 유형에 따른 평가의 방법 [평가요소] - 독립적으로 설립된 시설은 자체 운영규정을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 - 지자체 직영시설, 위탁시설(지자체 공단 위탁/지자체 산하 운영법인 위탁/청소년단체 위탁 등), 법인운영시설 등은 실질적으로 활용 되고 있는 규정의 관리 및 이행여부	
평가 자료	청소년수련원 운영규정집	

평가 항목	1.2 기관 운영체계	
평가 지표	1.2.2 회계 관리의 체계성	
평가 방향	청소년수련원은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의 적절성 그리고 결산의 투명성을 기하여야 한다.	
평가 기간	• 2014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평정 기준	매우우수(5)	4가지 항목 이상 해당 또는 외부/법인 감사실시
	우 수(4)	3가지 항목이 해당
	보 통(3)	2가지 항목이 해당
	미 흡(2)	1가지 항목이 해당
	매우미흡(1)	0가지 항목이 해당
평가 요소	• 각 요소별로 해당 여부를 O . X 표시	
	평가요소	O . X 여부
	1) 회계관련 필요 서류(원장 또는 장부 등)가 구비되어 있다.	
	2) 수입 및 지출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3) 예산서와 결산서가 연1회 이상 공개되고 있다.	
	4)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발행, 카드결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	
	5) 경영평가 및 신용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 내용	※ 회계연도 후에 외부감사 또는 법인감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면 평가요소 상관이 없이 5점부여(2년에 1회 감사를 받을 경우 3점부여) ※ 점수배점을 3점->5점으로 상향조정	
	• 평가의 중점 사항 - 청소년수련원의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와 신뢰성 제고를 위해 회계업무체계가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는지를 평가함 - 회계장부 및 수입·지출결의서 등의 관련 서류가 비치 여부와 수입 및 지출 원칙에 따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 재정의 투명성확보를 위해 외부감사 등을 실시하여 인터넷 및 신문 등 외부에 공개여부를 평가함	
평가 자료	회계장부(원장), 회계 및 세무사 사무소 수수료 영수증 등 증빙자료, 수입 및 지출 증빙자료, 외부감사실적 자료, 예·결산 자료 등	

평가 항목	1.2 기관 운영체계	
평가 지표	1.2.3 시설의 홍보 수준	
평가 방향	청소년수련원은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와 이용자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평가 기간	• 2014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평정 기준	매우우수(5)	4가지 항목 해당
	우 수(4)	3가지 항목 해당
	보 통(3)	2가지 항목 해당
	미 흡(2)	1가지 항목 해당
	매우미흡(1)	해당항목 없음
평가 요소	• 각 요소별로 해당 여부를 O . X 표시	
	요소항목	O . X 여부
	1) 홍보계획을 수립하였는가?	
	2) 홍보대상자 현황자료를 관리하고 있는가?	
	3) 홍보대상별 홍보방법은 적합한가?	
	4) 홍보방법은 다양한가?(2가지 방법 이상)	
평가 내용	• 평가요소별 확인사항 - 홍보계획의 수립여부 : 별도의 홍보계획을 기준으로 하되 별도 계획 없이 연간 수련원운영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인정함 * 단, 간단한 홍보방안이 아닌 계획서로써 기본적인 형식(목적, 내용, 방법)과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함 - 홍보자료 및 대상 : 학교, 주요 기관 및 관계자 등 수련원 자체 및 각종 사업 홍보를 위한 대상자 현황의 조사와 관련 자료의 관리 여부 - 홍보방법(사례) : 인터넷(홈페이지), SNS, 팸플릿, 현수막, 카달로그, 정기 소식지, 보도자료 발송 등 언론보도 노력 등 ※ 수련원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홍보방법의 다양성을 3가지->2가지로 조정 ※ 점수배점을 1점->2점으로 상향조정	
평가 자료	연간홍보계획서, 홍보대상 및 실적 자료, 기타 홍보 실적 자료	

2	청소년 및 프로그램
---	------------

평가 항목	2.1 청소년이용										
평가 지표	2.1.1 전체이용자 대비 청소년 이용률										
평가 방향	청소년수련원은 연간전체이용자 수 대비 청소년이용자 수의 비율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평가 기간	• 2014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평정 기준	<table border="1"> <tr> <td>매우우수(5)</td><td>70% 이상</td></tr> <tr> <td>우 수(4)</td><td>60% 이상 ~ 70% 미만</td></tr> <tr> <td>보 통(3)</td><td>50% 이상 ~ 60% 미만</td></tr> <tr> <td>미 립(2)</td><td>40% 이상 ~ 50% 미만</td></tr> <tr> <td>매우미립(1)</td><td>40% 미만</td></tr> </table>	매우우수(5)	70% 이상	우 수(4)	60% 이상 ~ 70% 미만	보 통(3)	50% 이상 ~ 60% 미만	미 립(2)	40% 이상 ~ 50% 미만	매우미립(1)	40% 미만
매우우수(5)	70% 이상										
우 수(4)	60% 이상 ~ 70% 미만										
보 통(3)	50% 이상 ~ 60% 미만										
미 립(2)	40% 이상 ~ 50% 미만										
매우미립(1)	40% 미만										
평가 요소	$\frac{2014년\sim 2015년\ 연\ 간\ 청\ 소\ 년\ 이\ 용\ 자\ 수\ (\quad)\ 명}{2014년\sim 2015년\ 연\ 간\ 전\ 체\ 이\ 용\ 자\ 수\ (\quad)\ 명} \times 100 = [\quad \%]$										
평가 내용	• 평가의 중점 사항 - 청소년수련원 공간 내 이용자 현황이 관리되는 시설 부지 내 전체 공간 대상으로 시설 공간·대관, 활동프로그램 참가에 따른 이용을 기준으로 이용률을 산정함 - 청소년수련원에서 지자체에 제출하는 공식적인 이용 인원 현황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일별 인원현황 관리 자료를 근거로 보고되는 공식 자료를 평가 자료로 활용함) [참고사항] 이용자의 범위 관련 참고자료 1) 이용자의 범위 - 이용자 범위 : 유아에서 성인에 이르는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함. 단, 가족이 청소년과 함께 수련시설을 이용한 경우 그 가족의 수는 연간 숙박자수에 산입하지 않음 - 청소년 범위 : 청소년기본법 상에 정의된 9세 이상 24세 이하(대학생 포함) - 주체별 범위 : 수련원 자체 운영 외에 외부 단체 대관에 의한 이용 인원도 포함 - 총 이용자 수 산정 : 일자 × 이용자 수로 계산함(숙박정원만 산정할 경우 당일 이용자 수가 제외되기 때문) - 산정의 예 : 2014년 1월 1일 ~ 1월 3일까지 2박3일 방문한 중학교학생 200명이고, 2014년 1월 3일 ~ 1월 5일까지 2박3일 방문한 중학교학생 100명인 경우, 200명 × 3일 + 100명 × 3일 = 900명 2) 평가 시 유의사항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이용 청소년을 포함하되, 운영 시설은 공식적으로 보고된 일별 출석인원을 합산함 - 청소년수련원 내에서 실시된 청소년문화존 프로그램 등 관련 사업의 참여 인원은 포함 3) 평가 시 제외사항 - 수련원 내에 입주한 타 기관 이용자 제외(상당복지센터, 성문화센터 등) - 축제, 전시 등 행사 프로그램의 단순 관람객은 제외(실인원 산출 문제 등 고려) - 인원 산출 및 관리가 되지 않는 야외공간의 임의적 이용은 제외 (인원 산출 및 관리가 되는 경우 인정) - 청소년수련원 외부에서 진행된 캠프, 국제/지역간 교류활동 및 지역사회 행사 또는 방문형 프로그램 등의 활동프로그램 참가 인원은 제외함 ※ 일계표 및 이용자관리 서류, 지자체보고자료, 방과후아카데미 출석부 필히 확인 ※ 세월호, 메르스로 인한 청소년이용자의 대폭감소로 인해 점수배점을 5점->3점으로 하향조정										
평가 자료	이용현황관리대장, 이용실적 보고 자료(지자체 등)										

평가 항목	2.1 청소년이용	
평가 지표	2.1.2 청소년의 안전관리	
평가 방향	청소년수련원은 수련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에게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수련활동 실시 전·후 안전교육을 실시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평가 기간	• 2014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평정 기준	매우우수(5)	평가요소 2가지 항목 모두 해당
	매우미흡(1)	평가요소 1가지 항목이라도 해당되지 않음
평가 요소	• 각 요소별로 만족 여부를 O . X 로 판단	
	요소항목	O . X 여부
	1) 생활안내 및 안전교육 실시 여부	
	2) 상병자(환자)에 대하여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구호설비·기구 비치 여부	
평가 내용	• 평가의 중점 사항 - 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는 청소년제반활동들이 전개되는 장소로서 청소년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에 보호를 요하는 안전교육을 통해 사전예방을 하여야 함 • 평가요소별 확인 사항 - 간단한 구급약품의 비치나 상병자에 대한 응급처치 등을 할 수 있도록 약품보관함, 침대, 침구 등을 갖추어야 함으로 양호실 등을 확인함 -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이용자의 신상현황 및 보호 조치내용의 기록 관리를 말하며, 참가현황 및 특이사항 관리대장 등을 확인함 - 해당 시설이용 및 수련활동에 관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용자(인솔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으로 입소식과 단위 프로그램 시작 시 안전교육실시여부와 안전교육 자료를 확인함 * 입소식과 각 단위프로그램별 어느 하나라도 안전교육을 미 실시 하였을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생활안내 및 안전교육일지 양식은 구매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양식 확인 ※ 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령 제10조제2항(수련시설의 안전기준)	
평가 자료	생활안내 및 안전교육 자료 및 일지, 응급처치 구호설비·기구 등	

평가 항목	2.2 프로그램 운영				
평가 지표	2.2.1 청소년수련활동 단위프로그램 매뉴얼 구비여부				
평가 방향	청소년수련원은 수련활동 단위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체계적인 매뉴얼을 갖추어야 한다.				
평가 기간	• 2014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평정 기준	매우우수(5)	총점 10점			
	우 수(4)	총점 6점			
	보 통(3)	총점 3점			
	매우미흡(1)	총점 0점			
평가 요소	매뉴얼 구비여부			내용의 체계성	총점
	매뉴얼이 모두 없음 0점		×	형식적 1점	=
	매뉴얼을 일부 구비 3점			체계적 2점	
	매뉴얼을 모두 구비 5점				
평가 내용	• 평가의 중점 사항 - 수련활동 단위프로그램 운영의 질적 수준과 체계성을 평가함 - 인증프로그램 운영 시 가점 부여(총점 4점) • 대상범위 - 수련활동 단위프로그램은 2박3일 또는 1박2일 프로그램이 아니라 2~3시간 단위(경우에 따라 4~6시간 이상 포함)의 프로그램을 의미함 • 인정범위 - 수련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련활동 단위프로그램(입소식, 퇴소식 포함)을 말하며 그 수련활동 단위프로그램 중 60%~99% 구비 시 ‘일부’, 60% 미만 시 ‘없음’으로 적용 - 형식적 수준이란 1~2매 내외의 개요수준의 매뉴얼을 의미함 - 체계적 수준이란 함은 수련활동 단위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지도안 및 워크시트, 기자재 및 장비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한 수준을 의미함 * 지도안 포함내용 : 활동시기, 대상·인원, 소요시간, 활동목표 및 활동개요, 준비물, 활동단계(도입·전개·마무리)별 활동내용 및 활동장비, 유의사항, 안전 및 유의사항, 담당자 등 * 다른 직원이 프로그램을 대신 맡게 되더라도 정상적인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 확인				
평가 자료	청소년수련활동 단위프로그램 현황 및 매뉴얼				

평가 항목	2.2 프로그램 운영		
평가 지표	2.2.2 청소년수련활동 운영관리		
평가 방향	청소년수련원은 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의 질적인 관리를 통해 우수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평가 기간	• 2014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평정 기준	• 총점 : 점		
평가 요소	요소항목		○ 판정 시 배점
	1) 지도인력의 전문성		3
	2) 단위프로그램 별 만족도 조사·분석 실시 여부		2
	총점 = 점		
평가 내용	• 평가의 대상 및 방법 - 1) 숙박정원 150명 당 전문성 있는 지도자 1명 배치 * 전문성 있는 지도자: 해당 프로그램 최소 2년 이상 지도경력을 갖춘 자, 혹은 국가 검정 자격을 갖춘 자, 또는 해당 프로그램 관련 연수과정 수료(이수)자. - 2) 단위프로그램 별 만족도 조사실시의 경우 각 프로그램별 만족도 조사와 그 결과를 분석하여 문서화 하였을 경우 인정(분석 자료가 없으면 'X' 평정) ※ 개별 프로그램 별 만족도는 전체 수련활동 종료 후 일괄적으로 조사가 가능 * 학교단체수련활동의 경우, 학교 측에 제출한 만족도 조사지를 분석한 경우도 인정 단, 만족도 조사지 분석 자료가 없으면 'X' 평정		
평가 자료	단위프로그램현황(인력 포함), 평가 및 연수일지, 사업평가 결과보고서, 프로그램 참가 현황 및 특이사항 관리대장 등 관련 문서		

3	인사 및 조직														
평가항목	3.1 직원 확보														
평가지표	3.1.1 직원 확보의 수준														
평가방향	청소년수련원은 숙박정원에 부합되도록 직원들의 규모를 안정적으로 확보·운영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 2016년 평가시점														
평정기준	매우우수(5)	평균 5% 이상	미흡(2)	평균 2%~2.9%											
	우수(4)	평균 4%~4.9%	매우미흡(1)	평균 1% 이하											
	보통(3)	평균 3%~3.9%													
평가요소	• 각 요소별 계산 후 전체 평균치 산출														
	(A) 전체직원 확보율 $\frac{2014년1월1일 \sim 2015년 12월31일 월평균 전체 직원수()명}{숙박정원()명} \times 100 = [\%]$														
	(B) 정규직원 확보율														
평가내용	• 직원의 범위 - 전체 직원 수 : 정규직과 계약직으로 4대사회보험 가입대상자인 직원 전체 ※ 4대 보험별 가입대상자(근로기준법상 관련 규정에 따름)														
	<table><tr><td>보험종류</td><td>내 용</td><td>비 고</td></tr><tr><td>국민연금</td><td>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제외</td><td rowspan="4">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의무가입</td></tr><tr><td>건강보험</td><td>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제외</td></tr><tr><td>고용보험</td><td>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제외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제외)</td></tr><tr><td>산재보험</td><td>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td></tr></table>				보험종류	내 용	비 고	국민연금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제외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의무가입	건강보험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제외	고용보험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제외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제외)	산재보험
보험종류	내 용	비 고													
국민연금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제외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의무가입													
건강보험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제외														
고용보험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제외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제외)														
산재보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														
	• 직원 대상 범위 - 정규직원 : 근로계약체결 시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근 전일제 직원 (무기계약직 포함) * 지자체 직영시설의 경우 시설 외 업무 담당자(공무원)도 정규직에 포함. - 계약직원 : 일정한 기간(2년 이하 모두 포함)동안 근로계약(연봉계약)을 체결한 풀타임 혹은 파트타임 직원을 말함. *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배치된 청소년지도사도 직원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 단, 중앙정부 지원 배치청소년지도사는 제외함. * 수련원 내 간접계약직원(위생, 환경, 시설관리 등도 포함, 단 교육프로그램 운영인력은 제외) * 비상근 및 겸직 원장. 단, 위탁단체의 대표자가 시설장을 겸직할 경우 급여기준으로 판단. * 수련원업무와 무관한 위탁운영법인 인력도 직원대상범위에서 제외 ※ 정규직원 확보율 삭제, 점수배점을 3점->1점으로 하향조정, 직원대상 범위를 계약직으로 확대														
평가자료	연간 직원명단 및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인사기록카드, 4대 보험가입증명서, 지도사자격증														

평가 항목	3.1 직원 확보																						
평가 지표	3.1.2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준수																						
평가 방향	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활동진흥법 규정에 의거 수용정원에 부합되는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평가 기간	• 2016년 현장평가 방문 시																						
평정 기준	매우우수(5)	청소년지도사 법적 배치기준 준수																					
	매우미흡(0)	청소년지도사 법적 배치기준 미 준수																					
평가 요소	• 정규직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준수 여부																						
평가 내용	• 적용범위 - 1급, 2급,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정규직원을 말함(계약직 제외) - 자격등급별로 복수의 자격증을 가진 경우 1개로 환산하여 적용함(사람 기준) - 상위 등급 인원 확보 시 하위등급의 인원을 확보하지 않아도 됨 • 제외대상 - 청소년수련원 직원 중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미소지자 제외 -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 관련 배치청소년지도사 제외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PM/SM) 운영을 위한 정규직·계약직 모두 제외 [수용정원별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표 예] <table><thead><tr><th>인원기준 (수용정원)</th><th>기본최소인원</th><th>추가최소인원</th><th>배치기준 (최소인원)</th></tr></thead><tbody><tr><td>1명~500명</td><td>2급 1인 이상 3급 1인 이상</td><td>-</td><td>2인 이상 (급별 기준)</td></tr><tr><td>501명~749명</td><td>상동</td><td>1급 1인 이상</td><td>3인 이상</td></tr><tr><td>750명~999명</td><td>상동</td><td>2인 이상 (1급1인 포함)</td><td>4인 이상</td></tr><tr><td>1,000명~1,249명</td><td>상동</td><td>3인 이상 (1급 1인 포함)</td><td>5인 이상</td></tr></tbody></table> ※ 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25조제2항(청소년지도사의 배치 등)			인원기준 (수용정원)	기본최소인원	추가최소인원	배치기준 (최소인원)	1명~500명	2급 1인 이상 3급 1인 이상	-	2인 이상 (급별 기준)	501명~749명	상동	1급 1인 이상	3인 이상	750명~999명	상동	2인 이상 (1급1인 포함)	4인 이상	1,000명~1,249명	상동	3인 이상 (1급 1인 포함)	5인 이상
	인원기준 (수용정원)	기본최소인원	추가최소인원	배치기준 (최소인원)																			
1명~500명	2급 1인 이상 3급 1인 이상	-	2인 이상 (급별 기준)																				
501명~749명	상동	1급 1인 이상	3인 이상																				
750명~999명	상동	2인 이상 (1급1인 포함)	4인 이상																				
1,000명~1,249명	상동	3인 이상 (1급 1인 포함)	5인 이상																				
평가 자료	근로계약서, 4대사회보험 가입증명서,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																						

평가 항목	3.1 직원확보	
평가 지표	3.1.3 운영대표자의 자격기준 준수	
평가 방향	청소년수련원은 관련법·정책지침에 따른 자격을 갖춘 운영대표자가 시설장으로서 공식적 직위와 권한을 갖고 시설 운영에 대한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	
평가 기간	• 2016년 현장평가 방문 시	
평정 기준	5점	운영대표자의 자격이 법적 기준을 준수하며 상근
	3점	운영대표자의 법적 기준 부분 준수
	0점	운영대표자의 자격이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상근하지 않음
평가 요소	•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증 상의 운영대표자와 시설장의 일치여부 • 운영대표자의 법적 자격기준 준수 및 상근여부 • 청소년수련원 직제규정의 시설장의 성명(공식 명칭 기준 : 관장 등) • 업무의 최종결재권자의 성명(내부결재 기준 : 시설장 직위 여부)	
평가 내용	• 평가의 중점 사항 - 독립적인 청소년시설로서 청소년수련원의 위상 확보 및 운영체제 구축을 위해 청소년수련원에서는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시설장을 위촉 또는 선임해야 함 [참고사항] - 2013년 여성가족부 지침 : 설치·운영자 및 운영대표자의 구분 * 설치·운영자(대표자) : 건물주 * 운영대표자 : 원장, 관장 등 시설의 대표(시설의 장) * 지방자치단체장은 운영대표자가 될 수 없음 * 운영대표자 등록 시 시설장이 아닌 시설 종사자 1인을 운영대표자로 등록할 수 없음 (운영대표자=시설장) * 법적 기준은 미흡하지만 대리인(예:부장)이 실제적인 결재권을 가진 경우 운영대표자로 부분 인정 • 평가방법 1) 운영대표자의 법적 자격기준 준수 및 상근 의무 - 운영대표자(시설장)은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운영대표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상근 2) 운영대표자와 시설장의 일치여부 -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증 상의 운영대표자 성명, 청소년수련원 직제규정의 시설장의 성명(공식 명칭 기준: 관장, 원장 등), 업무의 결재권자(내부결재 기준: 시설장 직위 여부)의 성명이 모두 같아야 함 * 청소년수련원 내 타 기관 임주기관의 기관장의 결재라인에 포함 시 불인정 * 객관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할 경우(직원 및 배치지도사) 불인정 ※ 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지침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8조(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의 자격)에 의거해 판단함 1. 1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2.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청소년육성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7. 제6호 외의 공무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평가 자료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증, 청소년수련원 직제규정(조직도), 내부결재 문서	

평가 항목	3.2 직원 교육 및 복지		
평가 지표	3.2.1 직무연수 참여자 비율		
평가 방향	청소년수련원은 직원들이 직무와 관련된 각종 연수에 참여하여 업무능력을 배양하도록 하여야 한다.		
평가 기간	• 2014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평정 기준	매우우수(5)	직무 연수 참여 직원 수 50% 이상	
	우 수(4)	직무 연수 참여 직원 수 50% 미만 40% 이상	
	보 통(3)	직무 연수 참여 직원 수 40% 미만 30% 이상	
	미 흡(2)	직무 연수 참여 직원 수 30% 미만 20% 이상	
	매우미흡(1)	직무 연수 참여 직원 수 20% 미만	
평가 요소	직무연수 참여 비율	$\frac{(2014년1월1일\sim2015년12월31일\text{ 직무연수 참여직원 수})}{\text{전체직원 수}} \times 100 = (\quad)\%$	
평가 내용	• 적용범위 - 내부 및 외부 직무연수 모두 포함 - 단, 내부연수 경우에는 연간 운영계획에 의거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직무관련 교육으로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한 경우 만 인정. - 외부연수 : 직원의 능력개발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출장명령 하에 실시되는 각종 직무연수과정 및 교육 프로그램을 말함 * 연수과정 또는 교육과정의 명칭 및 목표, 운영 형태를 기준으로 연수-교육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함 * 세미나, 워크숍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직무연수를 목표로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된 경우는 직무연수 과정으로 인정 • 인정범위 - 청소년활동 및 직무와 관련된 대학 및 대학원에 진학한 경우 - 수료증 발급받은 경우 - 해외연수는 근거자료가 있을 경우 - 2014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기간 중 중간 퇴사자의 교육연수 포함 ※ 자격인정을 위한 법정보수교육, 원격통신교육, 사이버교육도 포함 • 제외범위 - 수련원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업무회의는 제외 - 직무연수를 목표로 하지 않은 여행 또는 교류 중심의 프로그램은 내용에 따라 인정대상에서 제외 - 정책토론회 형태로 운영된 세미나, 워크숍, 심포지움의 참가 또는 연수교육 프로그램의 성격이 아닌 일반적인 정책(사업) 설명회 참가는 제외 • 직원범위 - 포함대상 : 정규직·계약직 직원, 배치 청소년지도사 ※ 점수배점을 3점->5점으로 상향조정		
평가 자료	연간 직원 직무연수계획, 출장명령서, 교육연수관리대장, 외부초빙증빙자료, 수료증 등 관련 문서		

평가 항목	3.2 직원 교육 및 복지	
평가 지표	3.2.2 직원의 성범죄 경력 확인 여부	
평가 방향	청소년수련원은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에 따라 직원 채용 시 성범죄 경력확인을 하여야 한다.	
평가 기간	• 2016년 현장평가 방문 시	
평정 기준	매우우수(5)	직원의 성범죄 경력 확인
	매우미흡(0)	직원의 성범죄 경력 미확인
평가 요소	• 신규직원 채용 시 성범죄 경력 확인 여부	
평가 내용	• 평가의 중점 사항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치료감호 포함) 집행이 종료·면제된 날로부터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되므로 취업자(예정자)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여야 함. • 직원범위 - 전체 직원(수련원 업무에 종사하는 전체 직원 포함. 한명이라도 성범죄 경력 미확인 시 매우미흡 '0'점 평정) ※ 근거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 성범죄 경력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혹은 다문화 인력의 경우 이를 감안하여 평가	
평가 자료	전체 직원 대상 성범죄 경력 확인서	

평가항목	3.2 직원 교육 및 복지			
평가지표	3.2.3 직원의 복리후생			
평가방향	청소년수련원은 직원들의 의욕적이고 능동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복지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 2014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평가기준	매우우수(5)	5개 이상 시행	미흡(2)	1~2개 시행
	우수(4)	4개 시행	매우미흡(1)	시행 사항 전혀 없음
	보통(3)	3개 시행		
평가요소	• 각 요소별로 시행 여부를 O . X 로 판단			
	요소항목			O . X 여부
	1) 규정된 휴가 제도를 준수하고 있다			
	2) 직원을 위한 병가, 휴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3) 정기적 포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4) 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지원을 하고 있다			
	5)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6) 직원의 경조사에 대한 경조사휴가 혹은 경조금을 지급 하고 있다			
	7) 직원에 대한 상여금 혹은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8) 직원 직계가족의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9) 직원의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있다			
	10) 직원의 숙박 또는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평가내용	11) 기타 직원복지와 관련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 적용범위 - 2014년 1월 1일~2015년 12월 31일, 2년간 정규직 및 계약직원, 배치청소년지도사, 정규직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인력(PM/SM) 그 가족의 복리후생 등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 • 요소항목별 적용범주 및 기준 1) 규정된 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자체 복무규정에 의한 휴가를 말하며, 이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 실시된 실적이 있는 경우를 말함.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휴가의 경우 그 일수를 수당으로 지급하였다면 인정 2) 직원을 위한 병가, 휴직제도 여부를 확인하고 그 실적이 있는지 확인하여 기관에서 이를 보장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정 3) 포상제도는 운영규정에 명시되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포상제도로써 규정에 맞게 실시하고 있으면 인정 4) 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외부교육연수 여부를 확인하고 그 실적이 있으면 인정 5) 초과근무수당은 운영규정에 명시되어 규정에 맞게 지급하고 있으면 인정 6) 직원의 경조사 휴가 및 경조금 여부를 확인하고 그 실적이 있으면 인정 7) 상여금 및 성과급은 운영규정에 명시되어 규정에 맞게 지급하고 있으면 인정 8) 가족수당은 운영규정에 명시되어 규정에 맞게 지급하고 있으면 인정 9)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중식비, 피복비, 차량유지비 등 어느 하나라도 실적이 있으면 인정 10) 직원의 숙박 또는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면 인정 11) 사내동호회가 구성되어 있고, 연2회 이상 실시되고 있을 때 인정 • 제외대상 - 계약직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인력(PM,SM), 수련원 내에 입주한 타기관의 소속 직원			
	※ 2014년 대비 평정기준 완화 및 수련원 현실을 감안, 10번 평가요소 추가			
평가자료	복지지원에 관한 규정 및 시행 관련문서			

평가 항목	4.1 시설환경																							
평가 지표	4.1.1 시설기준																							
평가 방향	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설기준을 준수·유지하여 청소년들이 수련활동에 참여하는데 안전하고, 쾌적한 활동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평가 기간	• 2016년 현장평가 방문 시																							
평정 기준	매우우수(5)	법적 기준 준수																						
	매우미흡(0)	법적 기준 미 준수																						
평가 요소	• 법적기준준수 여부																							
평가 내용	• 평가방법 -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규칙 제8조2(수련시설의 시설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설기준을 확인함 ※ 필히 청소년수련시설 일람표(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등록)와 현장과의 비교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청소년수련원 시설기준의 어느 한 시설(설비)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법적기준 미준수로서 '0'점으로 평정 함. ※ 2005년 이전에 설립 운영되는 수련원은 당시의 법적 기준을 준용 ※ 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규칙 제8조(수련시설의 시설기준) [청소년수련원 시설기준] <table><tr><th>구 분</th><th>기준 내용</th></tr><tr><td>생활관</td><td>100인 이상이 숙박, 규모로 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지도자용 숙박실은 2인실로 할 수 있다.</td></tr><tr><td>식당</td><td>매식을 하는 식당 또는 집단급식소로서 1인당 1제곱미터 이상 면적, 생활관 숙박정원의 100분의 30 이상의 인원에게 일시에 급식할 수 있어야 한다.</td></tr><tr><td>실내집회장</td><td>강당 회의실 등 150인 이상(1인 0.8제곱미터) 1실 이상 갖추어야 한다.</td></tr><tr><td>야외집회장</td><td>모닥불집회장, 야외무대, 광장 등 집회활동 필요한 기구, 설비 150인 이상(1인 0.7제곱미터) 갖추어야 한다.</td></tr><tr><td>체육활동장</td><td>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실내체육시설 또는 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실외체육시설 설치하여야 한다.</td></tr><tr><td>수련의 숲</td><td>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자연림 또는 인공적으로 조성한 수림지대를 갖추어야 한다.</td></tr><tr><td>강 의 실</td><td>1실당 면적 50제곱미터 이상 1실 이상 갖추어야 한다.</td></tr><tr><td>특성화수련 활동장</td><td>문화감성, 과학 및 정보화, 봉사과 협력정신, 모험심과 개척정신, 전문적 직업능력함양, 국제감각 함양 중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td></tr><tr><td>지도자실</td><td>청소년지도자들이 수련활동 지도 등을 위한 준비실로 사용하는 실내공간으로 의자·탁자 등 필요한 기구·설비를 갖추어야 한다.</td></tr><tr><td>휴게실</td><td>의자·탁자 등의 휴식설비와 간단한 식·음료의 판매시설(자동판매기구를 포함한다) 등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을 갖추어 한다.</td></tr></table>		구 분	기준 내용	생활관	100인 이상이 숙박, 규모로 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지도자용 숙박실은 2인실로 할 수 있다.	식당	매식을 하는 식당 또는 집단급식소로서 1인당 1제곱미터 이상 면적, 생활관 숙박정원의 100분의 30 이상의 인원에게 일시에 급식할 수 있어야 한다.	실내집회장	강당 회의실 등 150인 이상(1인 0.8제곱미터) 1실 이상 갖추어야 한다.	야외집회장	모닥불집회장, 야외무대, 광장 등 집회활동 필요한 기구, 설비 150인 이상(1인 0.7제곱미터) 갖추어야 한다.	체육활동장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실내체육시설 또는 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실외체육시설 설치하여야 한다.	수련의 숲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자연림 또는 인공적으로 조성한 수림지대를 갖추어야 한다.	강 의 실	1실당 면적 50제곱미터 이상 1실 이상 갖추어야 한다.	특성화수련 활동장	문화감성, 과학 및 정보화, 봉사과 협력정신, 모험심과 개척정신, 전문적 직업능력함양, 국제감각 함양 중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지도자실	청소년지도자들이 수련활동 지도 등을 위한 준비실로 사용하는 실내공간으로 의자·탁자 등 필요한 기구·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휴게실	의자·탁자 등의 휴식설비와 간단한 식·음료의 판매시설(자동판매기구를 포함한다) 등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을 갖추어 한다.
	구 분	기준 내용																						
	생활관	100인 이상이 숙박, 규모로 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지도자용 숙박실은 2인실로 할 수 있다.																						
	식당	매식을 하는 식당 또는 집단급식소로서 1인당 1제곱미터 이상 면적, 생활관 숙박정원의 100분의 30 이상의 인원에게 일시에 급식할 수 있어야 한다.																						
	실내집회장	강당 회의실 등 150인 이상(1인 0.8제곱미터) 1실 이상 갖추어야 한다.																						
	야외집회장	모닥불집회장, 야외무대, 광장 등 집회활동 필요한 기구, 설비 150인 이상(1인 0.7제곱미터) 갖추어야 한다.																						
	체육활동장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실내체육시설 또는 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실외체육시설 설치하여야 한다.																						
	수련의 숲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자연림 또는 인공적으로 조성한 수림지대를 갖추어야 한다.																						
	강 의 실	1실당 면적 50제곱미터 이상 1실 이상 갖추어야 한다.																						
	특성화수련 활동장	문화감성, 과학 및 정보화, 봉사과 협력정신, 모험심과 개척정신, 전문적 직업능력함양, 국제감각 함양 중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지도자실	청소년지도자들이 수련활동 지도 등을 위한 준비실로 사용하는 실내공간으로 의자·탁자 등 필요한 기구·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휴게실	의자·탁자 등의 휴식설비와 간단한 식·음료의 판매시설(자동판매기구를 포함한다) 등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을 갖추어 한다.																						

	비상설비	비상조명설비 또는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비상급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난방시설	난방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기타시설	방송설비, 양호실, 물품보관시설 및 공중전화를 갖추어야 한다. ※ 공중전화는 긴급전화 설치 시 인정
	금지시설	동일 건물 또는 당해 시설 안에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업소가 있어서는 아니되며,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에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가 있어서는 아니된다.
평가 자료	수련시설 일람표(지방자치단체에 신고·등록된 일람표), 총별도면, 시설현황자료	

평가 항목	4.1 시설환경	
평가 지표	4.1.2 생활관의 쾌적성	
평가 방향	청소년수련원은 이용자에게 신선하고 편안한 잠자리 마련 등 쾌적한 숙박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평가 기간	• 2016년 현장평가 방문 시	
평정 기준	매우우수(5)	평가요소 6개 항목 이상 양호
	우 수(4)	평가요소 5개 항목 양호
	보 통(3)	평가요소 4개 항목 양호
	미 흡(2)	평가요소 3개 항목 양호
	매우미흡(1)	평가요소 2개 항목 이하 양호
평가 요소	• 각 요소별로 시행 여부를 양호 / 불량으로 판단	
	요소항목	양호/불량
	1) 객실 청결상태	
	2) 객실 비품 및 가구관리 상태	
	3) 침구류 관리 상태	
	4) 화장실(샤워장 포함) 청결상태	
	5) 화장실(샤워장 포함) 비품 및 가구관리 상태	
	6) 객실·화장실 관리 체크리스트 작성 여부	
	7) 생활관 복도 내 청결상태	
평가 내용	• 평가방법 - 생활관(전체 객실)의 청결상태 및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함 • 요소항목별 적용범주 및 기준 - 현장방문 평가 시 무작위로 선정된 객실 3개 중 하나라도 벽, 천정, 바닥 등의 상태(곰팡이 및 얼룩, 불편한 냄새 등) 그리고 침구류 등이 불량(얼룩, 불편한 냄새)이면 모두 불량. - 현장방문 평가 시 무작위로 선정된 객실 3개 중 하나라도 비품 및 가구관리 상태(작동 불량, 파손 등)가 불량이면 모두 불량 - 현장방문 평가 시 무작위로 선정된 객실 3개의 화장실 중 하나라도 비위생적이거나 비품 및 가구관리 상태가 작동불량, 파손, 화장지 미비치, 불편한 냄새 등이 나는 경우이면 모두 불량 - 공동화장실 및 공동샤워장은 모두 점검 - 객실 및 화장실 관리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보유여부 확인 - 생활관 복도 중 한 개의 층의 복도 상태(청결상태 및 복도 내 조명의 밝기 상태, 비상구 표시 여부, 객실번호표, 숙박정원표시여부 등)가 불량이면 모두 불량 ※ 자연권 시설수련활동 요소 중 숙박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점수배점을 4->5점으로 상향 조정	
평가 자료	각종 관리대장 및 체크리스트, 현장방문 평가	

평가 항목	4.2 안전관리	
평가 지표	4.2.1 안전관리계획 수립의 체계성	
평가 방향	청소년수련원은 시설물 및 환경에 내재된 위험요인을 미리 점검 및 평가하여 위해요소로부터 인명 및 재산 보호와 안전관리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평가 기간	• 2015년 12월 31일 이전	
평정 기준	매우우수(5)	6개 항목 이상 해당
	우 수(4)	5개 항목 해당
	보 통(3)	4개 항목 해당
	미 흡(2)	3개 항목 이하 해당
	매우미흡(1)	안전관리계획서 미 수립
평가 요소	• 각 요소별로 시행 여부를 O . X 로 판단	
	요소항목	O . X 여부
	1) 안전관리 대상 적용범위를 지정하였다.	
	2)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다.	
	3) 가(임시)건축물에 대한 자체관리를 하고 있다.	
	4) 위해시설물 발견 시 대처방안을 마련하였다.	
	5) 사고발생 시 비상처리체계를 구축하였다.	
	6) 안전관리교육 계획 및 내용이 포함되었다.	
	7) 시설별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었다.	
평가 내용	• 평가방법 - 안전관리계획서 및 자체관리대장을 검토하여 내용의 현실성과 체계성 등을 확인하여 평가함	
	• 요소항목별 적용범주 및 기준 - 안전관리 대상은 생활관, 체육시설, 실내외 집회장, 식당, 특성화시설, 부대시설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시설 모두는 안전관리 대상이며 적용대상 시설물에 대한 현황이 파악되어야 함 - 안전관리 총괄 책임자, 시설별 안전관리 책임자, 시설별 안전관리자를 선정하여야 함 - 안전관리자별 주요업무내용 및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여야 함 - 위해 시설물 발견 시 보고처리 방법, 조치방법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함. - 안전사고 발생 시 종사자 비상망의 작성, 및 훈련, 외부 기관(소방서, 경찰서, 병원 등) 연계를 통한 비상처리체계 구축과 응급처치방법 등을 작성하여야 함. - 종류 및 유형별, 담당자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가스, 전기, 난방, 변전시설, 위험물 저장시설, 소방시설, 승강기, 건축, 토목, 기계, 활동시설 등 각 시설별 안전점검 내용, 방법, 기준, 일정, 보수방안 등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안전요소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점수배점을 4→5점으로 상향조정, 3번 평가요소 추가	
평가 자료	안전관리계획서, 소방계획서, 자체관리대장 등 현장실사 기준	

평가 항목	4.2 안전관리	
평가 지표	4.2.2 직원의 안전교육 실시	
평가 방향	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활동진흥법 규정에 의거 청소년수련활동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체직원 대상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평가 기간	• 2014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평정 기준	매우우수(5)	안전교육 연4회 이상 실시
	우 수(4)	안전교육 연1회~3회 실시
	매우미흡(0)	안전교육 미실시
평가 요소	• 전체직원 대상 분기별 안전교육 실시여부	
평가 내용	• 평가의 중점 사항 -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체 직원대상으로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직원범위 - 전체 직원(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등) • 인정범위 - 연간 운영계획에 의거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전체직원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교육(소방 및 방화관리, 응급대처관리, 위생관리 등)을 말하며, 전체 직원 중 90% 이상 참여한 교육만 인정(*별도 사무소 설치 운영하는 경우 사무소 직원 제외) • 제외범위 - 안전 분야 별 개인이 참가한 교육 제외 - 수련원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안전관련 업무회의는 제외 ※ 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령 제10조제2항(수련시설의 안전기준)	
평가 자료	연간 직원의 안전교육계획서, 안전교육일지, 안전교육참여일지 등 관련 문서	

평가 항목	4.2 안전관리	
평가 지표	4.2.3 직원의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평가 방향	청소년수련원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과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 등에관한법률 규정에 의거 시설의 직원 대상으로 연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을 실시하여야 함.	
평가 기간	• 2014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평정 기준	매우우수(5)	성희롱예방교육 연1회 이상 실시
	매우미흡(0)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평가 요소	• 전체직원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	
평가 내용	• 평가의 중점 사항 - 시설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직원이 안전하고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체 직원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각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 직원범위 - 전체 직원(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등) • 인정범위 -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 자체교육을 모두 포함 - 교육내용 ; 시설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 시설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 시설 내 성희롱 피해 직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 그 밖에 시설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 자체교육 시 준수사항 확인 - 직원 연수·조화·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 가능하지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치는 등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 교육에 해당하지 않음 ※ 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평가 자료	연간 직원의 성희롱 예방교육 계획서, 성희롱예방교육일지 등 관련 문서	

평가 항목	4.2 안전관리	
평가 지표	4.2.4 자체 안전점검 실시 및 지방자치단체장 보고	
평가 방향	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들의 정신적 건강과 쾌적한 숙박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평가 기간	• 2014년 1월 ~ 2016년 현장평가 시점	
평정 기준	매우우수(5)	자체 안전점검 실시와 지자체 보고
	보 통(3)	자체 안전점검 실시 후 지자체 미보고
	매우미흡(0)	자체 안전점검 미실시
평가 요소	• 자체 안전점검 실시여부와 지방자치단체 보고여부	
평가 내용	• 평가방법 - 매월 자체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을 실시여부와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매월 보고여부를 평가함 • 인정범위 - 공식문서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된 것만 인정(필요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확인) ※ 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8조(수련시설의 안전점검)	
평가 자료	안전점검대장, 안전점검표, 안전점검결과보고 발신 공문서 등	

평가 항목	4.2 안전관리	
평가 지표	4.2.5 집단급식소 관리의 적절성	
평가 방향	청소년수련원은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거 청소년 및 직원의 건강 증진을 위해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적절한 영양가가 유지되는 식사를 공급하며, 조리를 표준화하여 품질을 유지하는 합리적인 식당을 운영하여야 함.	
평가 기간	• 2016년 현장평가 방문 시	
평정 기준	매우우수(5)	8개 항목 해당
	우 수(4)	5~7개 항목 해당
	보 통(3)	3~4개 항목 해당
	미 흡(2)	2개 항목 해당
	매우미흡(1)	1개 항목 이하 해당
평가 요소	• 각 요소별로 만족 여부를 O . X 로 평가	
	요소항목	O . X 여부
	1) 집단급식소 신고여부	
	2) 조리사 채용 여부	
	3) 영양사의 식단 확인 여부	
	4) 조리 종사원의 연1회 이상 건강진단 실시여부	
	5) 매월 1회 식품위생점검 실시 여부	
	6) 조리종사원 대상 식품위생교육 실시 여부	
	7) 영양사 채용여부	
	8) 영양사 연 1회 식품 위생교육여부 또는 설치자 연1회 식품위생교육 실시여부	
평가 내용	• 인정범위	
	－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을 경우,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을 경우 둘 중 1인 채용 인정(조리사 채용, 영양사 채용 모두 인정)	
	－ 조리사, 영양사 자격증 확인과 근로계약 및 4대사회보험 확인을 통해 수련원의 직원일 경우 인정(계약직 인정)	
	－ 식품위생점검과 자체적으로 실시한 점검을 말하며 1개월이라도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X' 평정	
	－ 영양사의 식품위생교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의 교육을 말함	
	－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경우 조리사를 채용한 것으로 인정	
	－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조리사로서 직접 음식을 조리하는 경우 조리사 채용 인정	
	※ 근거 : 식품위생법 제51조(조리사), 제52조(영양사), 제88조(집단급식소)	
	* 급식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의 평가요소에 준용하여 평가(계약서 등 확인)	
	* 일반음식점영업으로 신고·운영 시 위의 평가요소에 준용하여 평가	
평가 자료	※ 자연권 시설의 현실을 고려하여 3번 평가요소 추가, 8번 평가요소 보완	
	※ 점수배점을 5점->3점으로 하향조정	
평가 자료	집단급식소 신고증, 식품위생점검, 영양사 식단 확인 증빙자료 및 교육일지	

평가 항목	4.2 안전관리	
평가 지표	4.2.6 시설배상책임보험 가입	
평가 방향	청소년수련원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규정에 의거 시설배상책임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평가 기간	• 2016년 현장평가 방문 시	
평정 기준	매우우수(5)	시설배상책임보험 가입
	매우미흡(0)	시설배상책임보험 미가입
평가 요소	• 시설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평가 내용	• 평가방법 - 청소년활동진흥법 규정에 의한 시설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 - 보험가입증명서 내용확인 사항 ； 보상한도액 대인 8천만 원 이상, 1사고 당 무한대 * 1사고 당 한도액을 정하였을 경우 매우미흡 '0'점 평정 ； 담보내역 및 가입기간 확인(현재 기준으로 보험가입기간이 지났을 경우 불인정) * 담보내역은 허가·등록한 시설의 건물, 부지, 특성화 시설 등 모두 포함되어야 함 - 영업책임보상보험, 여행자보험, 화재보험, 가스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은 시설배상책임보험과 별개임 ※ 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5조(보험가입)	
평가 자료	보험가입증명서 및 약관 등	

5	종합평가
----------	-------------

평가 항목	5.1 종합평가
평가 지표	5.1.1 전반적인 발전 노력 수준
평가 방향	청소년수련원은 시설장과 전 직원의 참여를 바탕으로 시설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평가 기간	• 2014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평정 기준	매우우수(5.0) 시설 발전을 위한 노력이 매우 높음
	우 수(4.5) 시설 발전을 위한 노력이 높음
	양 호(4.0) 시설 발전을 위한 노력이 있음
	보 통(3.5) 시설 발전을 위한 관심이 있음
	부 족(3.0) 시설 발전을 위한 관심이 없음
평가 요소	• 최근 3년간 운영개선노력 실적자료 검토 및 현장방문평가 시 시설 운영대표자 및 종사자들과의 인터뷰 등으로 판단함 • 시설장으로서 장기적인 발전에 대한 목표와 방향 • 직원의 직무환경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
평가 내용	• 평가방법 - 면담과 인터뷰 등을 통해 시설장으로서의 가치, 목표, 관심, 노력의 정도를 전반적인 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정함. - 시설 종사자들의 시설 운영에 대한 관심과 노력, 발전에 대한 의지를 종합적으로 평가 - 구체적인 실적 자료를 토대로 하며 앞의 평가지표에서 확인하지 못한 평가요소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장점 및 발전사항을 집중적으로 조사함 * 실적자료 : 예산, 지도인력, 청소년이용도, 프로그램 운영역량 등 실적 - 현재의 수준에 대한 시설 간 비교 보다는 각 시설의 여건과 한계를 고려하여 2년간 개선을 위한 노력의 정도를 중심으로 평가함 * 중장기계획의 연도별 추진목표 및 계획을 참조하여 개선-발전 노력을 확인 * 연간 기관 평가 또는 사업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개선-발전 노력을 확인 • 평가 시 고려사항 (가산점 인정 대상) - 이용 청소년에 대한 시설의 관심과 지원, 존중의 태도와 수준 - 직원 대상 복지 지원 측면에서 직원 및 배치지도사 등에 대한 교육·복지지원 여부 등을 고려하여 노력 여부 평가 - 정부(중앙, 지자체) 또는 민간에서 시행하는 청소년 분야 및 관련 분야의 공모사업에 대한 참여 현황을 확인하여 프로그램 개발 및 재원 다양화 부문에서 가산점 인정 * 직영시설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없어 공모사업 관련 평가지표는 제외하였으나 중앙정부 및 기타 분야는 참여 가능 -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노력여부 평가 - 기관 대상 외부(정부, 지자체, 유관기관 등) 포상실적 여부 - 시설유지보수 및 기능보강비 등의 시설투자 한 실적과 기타 발전노력이 있을 경우 가점(관련 실적 자료 확인) ※ 정성지표의 경우 평가위원들의 편차를 조정하기 위해 기본점수 3점 부여, 평정기준 수정
평가 자료	방문 평가 시 시설 종사자들과의 면담 및 인터뷰, 발전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자료

평가 항목	5.1 종합평가
평가 지표	5.1.2 종합평가
평가 방향	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정책에 따라 관련 법적 규정을 근거로 설립된 청소년전용시설로서 청소년정책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해 정책지침에 협력해야 한다.
평가 기간	• 2014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평정 기준	• 평가위원 간 합의하여 평정 • 점수범위 : 3점 ~ 5점 (기본점수 3점 부여)
평가 요소	• 청소년정책 협력 수준 • 기타 운영여건 및 환경과 평가의 준비 및 참여도를 고려한 평가위원 재량평가
평가 내용	• 가점사항 -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수련원의 입지적 여건으로 인해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할 경우 -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회원인 경우 - 전반적으로 시설운영·여건과 평가준비 및 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 재량 • 감점사항 - 수련시설 명칭 : 표현상 수련시설이 아닌 것으로 오해소지의 명칭(예; 인재개발수련원 등)과 수탁법인의 소유 시설로 오해할 수 있는 명칭 - 시설운영에 따른 감사 지적 등 운영의 부적절 사례 - 평가준비 및 참여도 등이 부실한 경우 평가위원 재량 • 기타사항 - 운영의 우수사례 및 평가지표에 반영하기 어려운 실적 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 재량 평정 • 추가사항 - 수련시설(자연권)을 청소년단체가 아닌 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한 경우 감점사유 - 평가대상기간(2년 기준) 동안 인명 및 성폭력(성추행) 사고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시설의 경우 평가등급을 미흡이하로 하향조정(현행 감점 적용)하며, 2016년도 평가완료 이후에도 유사 사건이 발생 할 경우에도 이를 적용함. ※ 정성지표의 경우 평가위원들의 편차를 조정하기 위해 기본점수 3점 부여
평가 자료	청소년운영위원회 구성·운영실적,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회원증 등

3. 2016년 유스호스텔 종합평가 지표

1) 지표체계 : 5개 영역 - 10개 항목 - 30개 평가지표

2) 배점기준 : 총점 100점 만점

평가 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항목	배점	평 가 지 표	평정 만점	가중치	배점	
1. 운영 및 관리체계 (11점)	1.1 기관 운영계획	3	1.1.1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여부	5	× 0.2	2→1	
			1.1.2 연간 운영계획 수립의 체계성	5	× 0.4	2	
	1.2 기관 운영체계	8	1.2.1 운영규정의 보유 및 관리	5	× 0.4	2	
			1.2.2 국제연맹과의 연계협력 수준	5	× 0.4	2	
			1.2.3 회계관리의 체계성	5	× 0.4	2	
			1.2.4 시설의 홍보 수준	5	× 0.4	2	
2. 청소년 및 프로그램 (19점)	2.1 청소년 이용	13	2.1.1 전체 숙박자 대비 청소년 비율	5	× 0.6	5→3	
			2.1.2 청소년의 안전관리	5	× 1.0	5	
			2.1.3 청소년 만족도 평가체계	5	× 1.0	5	
	2.2 프로그램의 제공	6	2.2.1 주변 역사·문화환경 연계 프로그램	5	× 0.2	2→1	
			2.2.2 지역 여행정보 제공	5	× 1.0	4→5	
3. 인사 및 조직 (11점)	3.1 직원 확보	5	3.1.1 직원확보 수준	5	× 0.2	2→1	
			3.1.2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준수	5	× 0.4	2	
			3.1.3 운영대표자의 자격기준 준수	5	× 0.4	2	
	3.2 직원 운영	6	3.2.1 직원의 성범죄 경력 확인 여부	5	× 0.4	2	
			3.2.2 직원의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5	× 0.4	2	
			3.2.3 직원 안전교육 실시	5	× 0.4	2	
4. 시설 및 안전 (49점)	4.1 시설 관리	22	4.1.1 연간 시설 가동률	5	× 0.2	3→1	
			4.1.2 시설 주변 환경의 건전성	5	× 0.6	3	
			4.1.3 시설 개선 노력	5	× 0.6	3	
			4.1.4. 시설기준의 적정성	각각 5	× 0.6	- 숙박실의 적정성	3
						- 자가취사장 구비 및 운영	3
						- 대화·정보실 구비 및 운영	3
						- 화장실·샤워실·세면장 운영	3
						- 지도자실, 휴게실 설치 및 운영	3
	4.2 시설운영관리	9	4.2.1 시설 운영기준 준수	5	× 0.6	3	
			4.2.2 생활지도 기준 준수	5	× 0.6	3	
			4.2.3 숙박정원 기준 준수	5	× 0.6	3	
	4.3 안전 및 위생 관리	18	4.3.1 안전관리계획 수립의 적절성	5	× 1.0	5	
			4.3.2 자체 안전점검 실시 및 지방자치 단체장 보고	5	× 0.8	4	
			4.3.3 시설배상책임보험 가입	5	× 0.8	4	
			4.3.4 시설 청결도 및 위생 상태	5	× 1.0	4→5	
5. 종합평가 (10점)	5.1 종합평가	10	5.1.1 전반적인 발전 노력 수준	5	× 1.0	5	
			5.1.2 종합평가(5)	5	× 1.0	5	
합계						100	

※ 진한 글씨(붉은색)로 표기된 내용은 2014년 대비 수정된 사항임.

3) 유스호스텔 평가지표별 평가방향 및 기준

1	운영 및 관리체계				
평가항목	1.1 기관 운영계획				
평가지표	1.1.1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여부				
평가방향	유스호스텔은 여행청소년의 숙식편의 제공 및 활동지원을 위한 시설로서 설립 취지를 실현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 계획의 대상기간 : 2015년 12월 기준 최근(5년 내)에 수립된 계획서				
평정기준	• 평점점수 : ()점(최대5점~최하0점)				
평가요소	요소		평정기준		○ 판정시 배점
	1)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보유하고 있다		X	○	2
	2) 분야별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X	○	1
	3) 예산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X	○	1
	4) 연도별 추진 일정을 수립하고 있다		X	○	1
	합계				
평가내용	• 평가의 중점 사항				
	- 중·장기 발전계획은 세부사업에 대한 추진방안의 평가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장기적인 발전목표를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계획을 추진하는지 종합적 관점에서 평가함				
	- 유스호스텔의 설립 취지에 따른 정체성 및 기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중심으로 평가함				
	※ 어떤 형태나 수준이든지 인정하고 요소별 평가				
평가내용	• 중·장기발전계획의 개념				
	- 유스호스텔이 중장기 기간(평균 3년 또는 5년 정도, 위탁기간 등)동안 이루고자하는 목표나 방향, 사업 및 기관 경영 등 분야별 추진계획을 문서화한 것을 의미함				
	- 중·장기 기간 동안 각 기관별 운영기반과 지역사회 및 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성취하려는 목표와 전략, 분야별 계획, 단계별 추진방안을 포함하여 작성함				
	• 평가 자료의 범위				
평가자료	- 공식적인 내부결재 또는 공식 발표 등 해당 유스호스텔의 발전계획으로 인정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친 공식 계획서를 평가 대상으로 함.				
	- 수립 시점 및 적용기간의 범위 : 2015년 12월 이전에 수립된 계획서를 기준으로 함.				
	* 단, 발전계획 기간이 2015년 12월로 종료되어 2016년 이후 기간을 대상으로 새로운 발전계획을 수립한 경우 평가 자료로 인정 가능				
	- 평가 대상 기간 중 위탁기관이 변경된 경우는 변경된 기관의 계획서로 평가 가능				
평가자료	- 위탁시설의 경우 수탁제안서에 포함된 중장기발전계획도 인정				
	- 직영시설의 경우 지자체 자체의 정책계획과 별도로 해당 시설별로 수립된 독립적인 발전계획서를 평가의 대상으로 함				
	※ 점수배점을 2점->1점으로 하향조정				
	유스호스텔 (중·장기) 발전계획서				

평가항목	1.1 기관 운영계획																						
평가지표	1.1.2 연간 운영계획 수립의 체계성																						
평가방향	유스호스텔은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매년 기관 운영 전반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해야 한다.																						
평가기간	• 연간계획의 대상기간 : 평가시점 전년도와 해당연도 연간 운영계획																						
평정기준	• 총점()점(최대 5점~최하 1점)																						
평가요소	<table border="1"> <thead> <tr> <th>요소항목</th><th colspan="2">평정기준</th><th>○ 판정시 배점</th></tr> </thead> <tbody> <tr> <td>1)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보유하고 있다</td><td>X</td><td>○</td><td>3</td></tr> <tr> <td>2) 세부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있다.</td><td>X</td><td>○</td><td>1</td></tr> <tr> <td>3) 예산계획이 수립되어 있다.</td><td>X</td><td>○</td><td>1</td></tr> <tr> <td colspan="4">총점 = 점</td></tr> </tbody> </table>			요소항목	평정기준		○ 판정시 배점	1)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보유하고 있다	X	○	3	2) 세부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X	○	1	3) 예산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X	○	1	총점 = 점			
요소항목	평정기준		○ 판정시 배점																				
1)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보유하고 있다	X	○	3																				
2) 세부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X	○	1																				
3) 예산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X	○	1																				
총점 = 점																							
평가내용	• 평가의 중점 사항 - 연간단위 계획으로서 당해 연도의 목표와 중점방향을 설정하고 전년도 평가결과와 수요자 참여 등을 토대로 체계적이며 시의성 있는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함 - 유스호스텔의 기능 수행과 관련된 목표, 계획 내용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 ※ 어떠한 형태나 수준이든지 인정하고 요소별로 평가 • 연간 운영계획의 개념 - 기관별 운영기관과 지역사회 및 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1년간 성취할 목표와 구체적인 추진내용, 분기별 또는 월별 운영계획과 기대효과를 포함하는 문서를 말함 - 기관 운영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포함하는 기관 전체의 운영계획으로 계획서의 완성도를 확인함 • 평가 자료의 범위 - 기관 자체적으로 내부결재를 통해 수립한 공식적인 계획서를 대상으로 함 - 위탁 시설의 경우 지자체에 제출하는 공식적인 연간운영계획서를 기준으로 함 * 단, 지자체 요구 양식에 따라 제출한 연간운영계획 보다 내부적으로 별도로 수립한 계획이 상세할 경우 내부 자료를 평가에 활용함. - 평가기간 중 운영기관이 변경된 경우는 변경된 기관의 계획을 대상으로 평가 가능																						
평가자료	평가시점 기준 전년도와 해당연도(2014, 2015) 유스호스텔 운영계획서																						

평가 항목	1.2 기관 운영체계	
평가 지표	1.2.1 운영규정의 보유 및 관리	
평가 방향	유스호스텔은 시설운영에 필수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으로 제정하여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체계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규정을 제정·관리해야 한다.	
평가 기간	•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정된 제규정	
평정 기준	5점	6개 이상 규정 보유
	4점	5개 규정 보유
	3점	4개 규정 보유
	2점	3개 규정 보유
	1점	2개 이하 규정 보유
평가 요소	• 관련규정의 유형 ①취업규칙, ②직제규정, ③인사관리규정, ④보수규정, ⑤복무규정, ⑥복리후생관리규정, ⑦회계 및 예산규정, ⑧사무(문서)관리규정, ⑨위임전결규정, ⑩여비규정, ⑪계약직 관리규정, ⑫물품(비품)관리규정, ⑬시설관리규정 등	
평가 내용	• 평가의 중점 사항 - 청소년전용시설의 공공기관으로서 위상과 관련하여 가장 기본적인 요건에 해당하는 운영규정 관리의 확인을 통해 제도적인 운영시스템의 구비 여부를 평가함 • 운영규정 범위 - 정관, 직제, 인사, 보수, 복무, 회계, 시설관리, 안전관리, 문서관리 등 유스호스텔 운영에 관련된 제반 업무 규정을 대상으로 함 - 개별 규정이 없이 전체 내용을 회칙 수준으로 간단하게 작성한 경우 2점 이하 부여 ★ <u>취업규칙(관할노동관서에 신고된 것 만 인정)</u> 작성 보유 시 인사, 보수, 복무, 복리규정 보유 인정 • 시설 유형에 따른 평가의 방법 [평가요소] - 독립적으로 설립된 시설은 자체 운영규정을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 - 지자체 직영시설, 위탁시설(지자체 공단 위탁/지자체 산하 운영법인 위탁/청소년단체 위탁 등), 법인운영시설 등은 실질적으로 활용 되고 있는 규정의 관리 및 이행여부	
평가 자료	관련 규정집 및 공문	

평가 항목	1.2 기관 운영체계	
평가 지표	1.2.2 국제연맹과의 연계협력 수준	
평가 방향	유스호스텔은 국제유스호스텔연맹이 제시하는 운영지침을 준수하고 적극적인 연계협력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평가 기간	• 2016년 현장방문 평가시	
평정 기준	5점	4개 요소 해당
	4점	3개 요소 해당
	3점	2개 요소 해당
	2점	1개 요소 해당
	1점	해당사항 없음
평가 요소	• 다음의 4가지 연계 협력 사항 해당 여부	
	① 국제유스호스텔연맹 규약에 따라 유스호스텔 회원 우대(회원 10% 이상 할인) ② 지침에 맞게 홍보물, 깃발 및 간판 등에 유스호스텔 로고 및 상표 사용 ③ 국제유스호스텔연맹의 예약시스템(www.hihostels.com)에 가입 ④ 한국유스호스텔연맹 회원 가입	
평가 내용	• 평가의 중점 사항 - 국제유스호스텔연맹이 제시하는 운영지침을 준수함으로써 국제연맹과의 연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 확인 • 유스호스텔 회원 우대 및 예약시스템 가입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나 관련 자료를 확인 • 다른 청소년수련시설과의 정보교환 및 업무 협조	
평가 자료	1. 홍보물, 깃발 및 간판 등에 유스호스텔 로고 및 상표 사용 여부 확인 2. 관련 문서	

평가 항목	1.2 기관 운영체계	
평가 지표	1.2.3 회계관리의 체계성	
평가 방향	유스호스텔은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의 적절성 그리고 결산의 투명성을 기하여야 한다.	
평가 기간	• 2014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평정 기준	5점	4가지 항목이상 또는 외부/법인 감사실시
	4점	3가지 항목이 해당
	3점	2가지 항목이 해당
	2점	1가지 항목이 해당
	1점	해당항목 없음
평가 요소	• 각 요소별로 해당 여부를 O . X 표시	
	평가요소	O . X 여부
	1) 회계관련 필요 서류(원장 또는 장부 등)가 구비되어 있다.	
	2) 수입 및 지출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3) 예산서와 결산서가 연1회 이상 공개되고 있다.	
	4)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발행, 카드결재 등을 실시하고 있다.	
	5) 경영평가 및 신용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 내용	※ 회계연도 후에 외부감사 또는 법인감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면 평가요소 상관 없이 5점부여 (2년에 1회 감사를 받을 경우 3점부여)	
	• 평가의 중점 사항 - 유스호스텔의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와 신뢰성 제고를 위해 회계업무체계가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는지를 평가함 - 회계장부 및 수입·지출결의서 등의 관련 서류가 비치 여부와 수입 및 지출 원칙에 따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 재정의 투명성확보를 위해 외부감사 등을 실시하여 인터넷 및 신문 등 외부에 공개여부를 평가함	
평가 자료	회계장부(원장), 회계 및 세무사 사무소 수수료 영수증 등 증빙자료, 수입 및 지출 증빙자료, 외부감사실적 자료, 예·결산 자료 등	

평가항목	1.2 기관 운영체계	
평가지표	1.2.4 시설의 홍보 수준	
평가방향	유스호스텔은 운영의 활성화와 이용자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 2014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평정기준	5점	4가지 해당
	4점	3가지 해당
	3점	2가지 해당
	2점	1가지 해당
	1점	해당항목 없음
평가요소	• 각 요소별로 해당 여부를 O . X 표시	
	요소항목	O . X 여부
	1) 홍보계획을 수립하였는가?	
	2) 홍보대상자 현황자료를 관리하고 있는가?	
	3) 홍보대상별 홍보방법은 적합한가?	
	4) 홍보방법은 다양한가?(2가지 방법 이상)	
평가내용	• 평가요소별 확인사항 - 홍보계획의 수립여부 : 별도의 홍보계획을 기준으로 하되 별도 계획 없이 연간 운영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인정함 * 단, 간단한 홍보방안이 아닌 계획서로서 기본적인 형식(목적, 내용, 방법)과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함 - 홍보대상 : 유스호스텔 자체 및 각종 사업 홍보를 위한 대상자 현황 등 관련 자료의 관리 여부 - 홍보방법(사례) : 인터넷(홈페이지), SNS, 팸플릿, 카달로그, 현수막, 정기 및 부정기 소식지, 보도자료 발송 등 언론보도 노력 등 ※ 유스호스텔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평가요소 4) 홍보방법의 다양성을 3가지->2가지로 조정	
평가자료	연간홍보계획서, 홍보실적 자료, 기타 홍보 실적 자료, 관광 안내 책자나 관광 지도에 해당 시설의 소재 명시 여부 등	

평가항목	2.1 청소년이용		
평가지표	2.1.1 전체 숙박자 대비 청소년 비율		
평가방향	유스호스텔은 연간 전체 숙박 이용자 수 대비 청소년 숙박 이용자 수의 비율을 일정 정도 유지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 2014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평정기준		2014~2015년도 연간 외국인 이용자 수가 5만명 미만인 경우	2014~2015년도 연간 외국인 이용자 수가 5만명 이상인 경우
	5점	70% 이상	50% 이상
	4점	60% ~ 69%	40% ~ 49%
	3점	50% ~ 59%	30% ~ 39%
	2점	40% ~ 49%	20% ~ 29%
	1점	40% 미만	20% 미만
평가요소	$\frac{\text{연간청소년숙박자수}}{\text{연간전체숙박자수}} \times 100 = (\quad \quad \quad \%)$		
평가내용	• 평가의 중점 사항 - 가능한 유스호스텔에서 지자체에 제출하는 공식적인 이용 인원 현황 자료를 기준으로 함(일별 인원현황 관리 자료를 근거로 보고되는 공식 자료를 평가 자료로 활용함) • 이용자의 범위 - 이용자 범위 : 유아에서 성인에 이르는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함. 단, 가족이 청소년과 함께 이용한 경우 그 가족의 수는 연간 숙박자수에 산입하지 않음 - 청소년 범위 : 청소년기본법 상에 정의된 9세 이상 24세 이하(대학생 포함) - 총 이용자 수 산정 : 숙박일 × 이용자 수로 계산함(숙박정원만 산정) - 산정의 예 : 2014년 1월 1일 ~ 1월 3일까지 2박3일 방문한 중학교학생 200명이고, 2014년 1월 3일 ~ 1월 5일까지 2박3일 방문한 중학교 학생 100명인 경우, 200명 × 2박 + 100명 × 2박 = 총 숙박자수 = 600명 • 평가위원은 현장방문 평가 시 특정 기간(특정 월 등)을 선정하여 실제 이용인원을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나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서면조사표와 차이가 있을 경우 평가점수에서 2점 감점 처리할 수 있음 ※ 일계표 및 이용자관리 서류, 지자체보고자료 필히 확인 ※ 세월호, 메르스로 인한 청소년이용자의 대폭감소로 인해 점수배점을 5점->3점으로 하향 조정		
평가자료	이용현황관리대장, 이용실적 보고 자료(지자체 등)		

평가 항목	2.1 청소년이용		
평가 지표	2.1.2 청소년의 안전관리		
평가 방향	유스호스텔은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교육 실시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평가 기간	• 2014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평정 기준	5점	필수항목 포함하여 2가지 항목 모두 해당	
	1점	필수항목 1가지 항목이라도 해당되지 않음	
평가 요소	• 각 요소별로 만족 여부를 O . X 로 판단		
	요소항목		O . X 여부
	1) 생활안내 및 안전교육 실시 여부		
	2) 상병자(환자)에 대하여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구호설비·기구 비치 여부		
평가 내용	• 평가의 중점 사항		
	- 청소년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에 보호를 요하는 현황파악 및 안전교육을 통해 사전예방을 하여야 함		
평가 내용	• 평가요소별 확인 사항		
	-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이용자의 신상현황 및 보호 조치내용의 기록 관리를 말하며, 참가현황 및 특이사항 관리대장 등을 확인함		
평가 내용	- 학교단체 숙박의 경우는 학교 측으로부터 받은 명단은 인정함		
	- 간단한 구급약품의 비치나 상병자(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등을 할 수 있도록 약품보관함, 침대, 침구 등을 갖추어야 하므로 양호실 등을 확인함		
평가 내용	※ 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령 제10조제2항(수련시설의 안전기준)		
평가 자료	생활안내 및 안전교육 자료 및 일지, 숙박자 현황 및 특이사항 관리대장 등		

평가 항목	2.1 청소년이용		
평가 지표	2.1.3 청소년 만족도 평가체계		
평가 방향	유스호스텔은 이용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설 운영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평가 기간	• 2014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평정 기준	5점	3가지 항목 모두 해당	
	3점	1-2가지 항목 해당	
	1점	해당사항 없음	
평가 요소	• 각 요소별로 해당 여부를 O . X 로 판단		
	요소항목		O . X 여부
	1)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2) 만족도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평가하고 있음		
	3) 만족도 조사 결과를 시설 운영(프로그램 포함) 개선에 반영함		
평가 내용	• 평가의 중점 사항		
	- 이용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관 운영에 반영하도록 유도		
	* 학교단체(수학여행 등), 청소년단체 등의 경우, 해당 학교나 단체 측에 제출한 만족도 조사지를 분석한 경우도 인정		
	• 평가요소별 확인 사항		
	- 만족도 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3번 평가요소 보완		
평가 자료	자체 만족도 조사지 샘플, 자체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도 조사결과 반영 증빙 자료 등		

평가 항목	2.2 프로그램의 제공	
평가 지표	2.2.1 주변 역사·문화환경 연계 프로그램	
평가 방향	유스호스텔은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주변 역사·문화 환경 등 시설 환경 여건을 발전적으로 활용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평가 기간	• 2014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평정 기준	5점	4개 이상
	4점	3개
	3점	2개
	2점	1개
	1점	실적 없음
평가 요소	• 프로그램 종 수	
평가 내용	• 평가의 중점 사항 - 주변 역사·문화 환경과 연계한 프로그램 제공 여부 - 자체제작한 프로그램 이용 안내 책자 - 답사 및 관광 이외의 외부프로그램 제외 ※ 배점을 2->1점으로 하향조정	
평가 자료	자체 개발 프로그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평가 항목	2.2 프로그램의 제공	
평가 지표	2.2.2 지역 여행정보 제공	
평가 방향	유스호스텔은 여행책자 및 브로셔를 비치하거나 게시하여 지역의 여행 및 관광 참여도를 높여야 한다.	
평가 기간	• 2014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평정 기준	5점	3개 해당
	3점	1~2개 해당
	1점	해당사항 없음
평가 요소	• 각 요소별 해당 여부를 O . X 로 판단	
	요소항목	O . X 여부
	1) 외부 여행정보 자료 비치	
	2) 홈페이지에 지역 여행정보 제공	
	3) 자체 여행정보 제작	
평가 내용	• 평가의 중점 사항 - 지역 여행정보 제공을 위한 노력 정도를 중심으로 평가	
	• 인정 범위 - 외부 여행정보 자료 : 외부 기관에서 제작한 여행정보 - 자체 여행정보 : 해당 유스호스텔에서 제작한 지역 여행 관련 책자 혹은 브로셔 등	
	※ 배점을 4→5점으로 상향조정	
평가 자료	여행정보 자료 비치 및 정보제공 여부 현장 실사	

3	인사 및 조직
----------	----------------

평가항목	3.1 직원 확보															
평가지표	3.1.1 직원 확보 수준															
평가방향	유스호텔은 숙박정원에 부합하는 규모의 직원들을 확보·운영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 2016년 평가시점															
평가기준	5점	평균 5% 이상	2점	평균 2%~2.9%												
	4점	평균 4%~4.9%	1점	평균 1% 이하												
	3점	평균 3%~3.9%														
평가요소	• 각 요소별 계산 후 전체 평균치 산출															
	(A) 전체직원 확보율 2014년1월1일 ~2015년 12월31일 월평균 전체 직원수()명 숙박정원()명 × 100=[%] (B) 정규직원 확보율															
평가내용	• 직원의 범위															
	- 전체 직원 수 : 정규직과 계약직으로 4대사회보험 가입대상자인 직원 전체 ※ 4대 보험별 가입대상자(근로기준법상 관련 규정에 따름)															
평가내용	<table><tr><td>보험종류</td><td>내 용</td><td>비 고</td></tr><tr><td>국민연금</td><td>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제외</td><td rowspan="4">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의무가입</td></tr><tr><td>건강보험</td><td>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제외</td></tr><tr><td>고용보험</td><td>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제외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제외)</td></tr><tr><td>산재보험</td><td>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td></tr></table>				보험종류	내 용	비 고	국민연금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제외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의무가입	건강보험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제외	고용보험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제외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제외)	산재보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
	보험종류	내 용	비 고													
국민연금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제외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의무가입														
건강보험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제외															
고용보험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제외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제외)															
산재보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															
평가내용	• 직원 대상 범위															
	- 정규직원 : 근로계약체결 시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근 전일제 직원(무기계약직 포함) * 지자체 직영시설의 경우 시설 외 업무 담당자(공무원)도 정규직에 포함. - 계약직원 : 일정한 기간(2년 이하 모두 포함)동안 근로계약(연봉계약)을 체결한 풀타임 혹은 파트타임 직원을 말함. *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배치된 청소년지도사도 직원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 단, 중앙정부 지원 배치청소년지도사 제외함. * 유스호텔 내 간접계약직원(위생, 식당, 환경, 시설관리 등도 포함, 단 교육프로그램 운영인력은 제외) * 비상근 및 겸직 원장. 단, 위탁단체의 대표자가 시설장을 겸직한 경우 급여기준으로 판단. * 유스호텔업무와 무관한 위탁운영법인 인력도 직원대상범위에서 제외															
평가내용	※ 정규직원 확보율 삭제, 점수배점을 2점->1점으로 하향조정, 직원대상 범위를 계약직으로 확대															
	평가자료															
평가자료	연간 직원 명단 및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4대 보험 지급 관련 자료															

평가 항목	3.1 직원 확보														
평가 지표	3.1.2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준수														
평가 방향	유스호스텔은 청소년지도사 배치에 관한 법정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평가 기간	• 2016년 현장방문 평가시														
평정 기준	5점	청소년지도사 법적 배치기준 준수													
	0점	청소년지도사 법적 배치기준 미 준수													
평가 요소	• 정규직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준수 여부														
평가 내용	• 적용범위 - 1급, 2급,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정규직원을 말함(계약직 제외) - 자격등급별로 복수의 자격증을 가진 경우 1개로 환산하여 적용함(사람 기준) - 상위 등급 인원 확보 시 하위등급의 인원을 확보하지 않아도 됨 • 제외대상 - 직원 중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미소지자 제외 -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 관련 배치청소년지도사 제외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PM/SM) 운영을 위한 정규직·계약직 모두 제외 [수용정원별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표 예] <table><tr><th>인원기준 (수용정원)</th><th>기본최소인원</th><th>추가최소인원</th><th>배치기준 (최소인원)</th></tr><tr><td>1명~500명</td><td>3급 1인 이상</td><td>-</td><td>3급 1인 이상</td></tr><tr><td>500명 초과</td><td>3급 1인 이상</td><td>2급 지도사 1인 이상</td><td>3급 1인, 2급 1인 이상</td></tr></table> ※ 근거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청소년지도사의 배치 등) 별표 5			인원기준 (수용정원)	기본최소인원	추가최소인원	배치기준 (최소인원)	1명~500명	3급 1인 이상	-	3급 1인 이상	500명 초과	3급 1인 이상	2급 지도사 1인 이상	3급 1인, 2급 1인 이상
	인원기준 (수용정원)	기본최소인원	추가최소인원	배치기준 (최소인원)											
	1명~500명	3급 1인 이상	-	3급 1인 이상											
	500명 초과	3급 1인 이상	2급 지도사 1인 이상	3급 1인, 2급 1인 이상											
평가 자료	근로계약서, 4대사회보험 가입증명서,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														

평가 항목	3.1 직원확보율	
평가 지표	3.1.3 운영대표자의 자격기준 준수	
평가 방향	유스호스텔 시설운영 대표자의 자격이 법적 근거에 부합하여야 한다.	
평가 기간	• 2016년 평가시점 기준	
평정 기준	5점	운영대표자의 자격이 법적 기준을 준수하며 상근
	3점	운영대표자의 법적 기준 부분 준수
	0점	운영대표자의 자격이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상근하지 않음
평가 요소	•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증 상의 운영대표자와 시설장의 일치여부 • 운영대표자의 법적 자격기준 준수 및 상근여부 • 청소년수련원 직제규정의 시설장의 성명(공식 명칭 기준 : 관장 등) • 업무의 최종결재권자의 성명(내부결재 기준 : 시설장 직위 여부)	
평가 내용	• 평가의 중점 사항 - 독립적인 청소년시설로서 유스호스텔의 위상 확보 및 운영체제 구축을 위해 유스호스텔에서는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시설장을 위촉 또는 선임해야 함 [참고사항] - 2013년 여성가족부 지침 : 설치·운영자 및 운영대표자의 구분 * 설치·운영자(대표자) : 건물주 * 운영대표자 : 원장, 관장 등 시설의 대표(시설의 장) * 지방자치단체장은 운영대표자가 될 수 없음 * 운영대표자 등록 시 시설장이 아닌 시설 종사자 1인을 운영대표자로 등록할 수 없음 (운영대표자=시설장) * 법적 기준은 미흡하지만 대리인(예:부장)이 실제적인 결재권을 가진 경우 운영대표자로 부분 인정 • 평가방법 1) 운영대표자의 법적 자격기준 준수 및 상근 의무 - 운영대표자(시설장)은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운영대표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상근 2) 운영대표자와 시설장의 일치여부 -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증 상의 운영대표자 성명, 유스호스텔 직제규정의 시설장의 성명(공식 명칭 기준: 관장, 원장 등), 업무의 결재권자(내부결재 기준: 시설장 직위 여부)의 성명이 모두 같아야 함 * 유스호스텔 내 타 기관 입주기관의 기관장의 결재라인에 포함 시 불인정 * 객관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할 경우(직원 및 배치지도사) 불인정 ※ 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지침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8조(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의 자격)에 의거해 판단함 1. 1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2.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청소년육성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7. 제6호 외의 공무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평가 자료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증, 유스호스텔 직제규정(조직도), 내부결재 문서	

평가 항목	3.2 직원 운영	
평가 지표	3.2.1 직원의 성범죄 경력 확인 여부	
평가 방향	유스호스텔은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에 따라 직원 채용 시 성범죄 경력확인을 하여야 한다.	
평가 기간	• 2016년 현장방문 평가시	
평정 기준	5점	직원의 성범죄 경력 확인
	0점	직원의 성범죄 경력 미확인
평가 요소	• 신규직원 채용 시 성범죄 경력 확인 여부	
평가 내용	• 평가의 중점 사항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치료감호 포함) 집행이 종료·면제된 날로부터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되므로 취업자(예정자)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여야 함. • 직원범위 - 전체 직원 ※ 근거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 성범죄 경력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혹은 다문화 인력의 경우 이를 감안하여 평가	
평가 자료	전체 직원 대상 성범죄 경력 확인서	

평가항목	3.2 직원 운영				
평가지표	3.2.2 직원의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평가방향	유스호스텔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을 규정에 의거 시설의 직원 대상으로 연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평가기간	• 2014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평정기준	<table border="1"> <tr> <td>매우우수(5)</td><td>성희롱예방교육 연1회 이상 실시</td></tr> <tr> <td>매우미흡(0)</td><td>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td></tr> </table>	매우우수(5)	성희롱예방교육 연1회 이상 실시	매우미흡(0)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매우우수(5)	성희롱예방교육 연1회 이상 실시				
매우미흡(0)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평가요소	• 전체직원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				
평가내용	• 평가의 중점 사항 - 시설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직원이 안전하고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체 직원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각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 직원범위 - 전체 직원(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등) • 인정범위 -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 자체교육을 모두 포함 - 교육내용 ; 시설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 시설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 시설 내 성희롱 피해 직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 그 밖에 시설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 자체교육 시 준수사항 확인 - 직원 연수·조회·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 가능하지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치는 등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 교육에 해당하지 않음 ※ 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법을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평가자료	연간 직원의 성희롱 예방교육 계획서, 성희롱예방교육일지 등 관련 문서				

평가항목	3.2 직원 운영	
평가지표	3.2.3 직원의 안전교육 실시	
평가방향	유스호스텔은 청소년활동진흥법 규정에 의거 전체직원 대상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 2014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평정기준	5점	안전교육 연4회 이상 실시
	4점	안전교육 연1회~3회 실시
	0점	안전교육 미실시
평가요소	• 전체직원 대상 분기별 안전교육 실시여부	
평가내용	• 평가의 중점 사항 -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성확보를 위해 전체 직원대상으로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직원범위 - 전체 직원(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등) • 인정범위 - 연간 운영계획에 의거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전체직원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교육(소방 및 방화관리, 응급대처관리, 위생관리 등)을 말하며, 전체 직원 중 90% 이상 참여한 교육만 인정(*별도 사무소 설치 운영하는 경우 사무소 직원 제외) • 제외범위 - 안전 분야 별 개인이 참가한 교육 제외 - 기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안전관련 업무회의는 제외 ※ 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령 제10조제2항(수련시설의 안전기준)	
평가자료	연간 직원의 안전교육계획서, 안전교육일지 등 관련 문서	

4	시설 및 안전
---	---------

평가 항목	4.1 시설관리	
평가 지표	4.1.1 연간 시설 가동률	
평가 방향	유스호스텔은 시설의 연간 서비스 제공 비율을 높게 유지해야 한다.	
평가 기간	• 2014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평정 기준	5점	85% 초과
	4점	75% 초과 ~ 85% 이하
	3점	65% 초과 ~ 75% 이하
	2점	55% 초과 ~ 65% 이하
	1점	55% 이하
평가 요소	$\text{연간 시설 가동률} = \frac{\text{연간 운영일수}}{365} \times 100 = (\quad \quad \quad \%)$	
평가 내용	• 평가방법 - 해당 유스호스텔의 연간 서비스 제공 일수를 중심으로 판정 • 일수 산정 방법 - 연간 운영일 수 = 1명 이상의 청소년이 이용한 일 수 - 시설 개·보수 등 불가피한 사유로 휴관한 경우 해당 휴관일 수만큼 분모에서 차감 - 휴관일 수는 공식 문서를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세월호, 메르스로 인한 시설운영의 불가피성을 감안하여 점수배점을 3점->1점으로 하향조정	
평가 자료	시설 운영 및 이용현황 자료(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규칙 제14조의 2에 따른 별지 제11호 서식 ‘청소년시설 운영현황’ 문서), 휴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공식 문서 등	

평가 항목	4.1 시설관리	
평가 지표	4.1.2 시설 주변 환경의 건전성	
평가 방향	유스호스텔은 여행청소년 등 이용 청소년의 건전하고 안전한 이용이 가능한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평가 기간	• 2014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평정 기준	5점	1), 2), 3) 충족
	3점	1), 2) 충족
	0점	1) 또는 2) 미충족시
평가 요소	• 각 요소별 해당 여부를 O . X 로 판단	
	요소항목	O . X 여부
	1) 동일 건물 또는 당해 시설 안에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업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2) 당해 시설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에 유흥주점 등 청소년이 이 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이 없다	
	3) 주변에 명승고적지, 역사 유적지 등이 있어 여행활동 시 이용하기 편리하다.	
평가 내용	• 평가방법 -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규칙 제8조의 수련시설 시설기준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 •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 ※ 평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수정함	
평가 자료	현장 실사 및 주변 환경 설명, 주변 청소년유해시설 현황 등	

평가항목	4.1 시설관리						
평가지표	4.1.3 시설개선 노력						
평가방향	유스호스텔의 운영대표자는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청소년전용시설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보강)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 2014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평정기준	<table border="1"> <tr> <td>5점</td><td>시설개선 실적이 있음</td></tr> <tr> <td>3점</td><td>시설개선 계획이 있으나 개선 실적이 없음</td></tr> <tr> <td>1점</td><td>시설개선 계획이 없음</td></tr> </table>	5점	시설개선 실적이 있음	3점	시설개선 계획이 있으나 개선 실적이 없음	1점	시설개선 계획이 없음
5점	시설개선 실적이 있음						
3점	시설개선 계획이 있으나 개선 실적이 없음						
1점	시설개선 계획이 없음						
평가요소	• 시설개선 계획 구비 여부 • 시설 개선 실적 구비 여부						
평가내용	• 평가중점사항 - 시설개선계획을 구비하고 실제 운영함으로써 쾌적한 시설환경을 위해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는지를 평가함 • 인정범위 - 기능보강 및 개보수 비용인 국고 및 지방비 지원, 기금융자 및 개인융자 모두 포함 - 신규시설건립비용, 부지확보, <u>교육기자재</u> 구입을 위한 비용 등 시설환경에 투자한 비용 포함						
평가자료	시설 중장기관리계획, 연차별 관리운영계획, 개보수 실적 현황 등						

평가 항목	4.1 시설관리	
평가 지표	4.1.4 시설관리의 적절성 - 숙박실의 적정성	
평가 방향	유스호스텔의 숙박실은 법적 기준에 맞게 구성되어 운영되어야 한다.	
평가 기간	• 2014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평정 기준	5점	준수
	0점	미준수
평가 요소	• 해당 여부를 O . X 로 판단	
	요소항목	O . X 여부
	수련시설 설치기준 준수	
평가 내용	• 평가방법 -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규칙 제8조의 수련시설 시설기준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 • 유스호스텔 숙박실에 관한 설치기준 - 숙박실은 숙박정원 1인당 2.4㎡ 이상이어야 한다. - 채광과 통풍이 양호하여야 하며, 지하실 등에 설치되어서는 아니된다.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정원의 100분의 10 이상 규모의 숙박실은 침대식으로 하여야 한다. - 각각의 숙박실은 10인 이하의 규모로 하되, 2인실 이하의 숙박정원의 합계는 전체숙박정원의 100분의 40을 초과할 수 없다. - 청소년을 동반한 가족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가족실을 둘 수 있으나, 이 경우 그 숙박정원의 합계는 전체숙박정원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 숙박실이 있는 층마다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샤워실·세면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숙박실 전체에 화장실 등이 설치된 경우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공동세탁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세면장·샤워장을 세탁실로도 사용할 수 있는 구조 및 면적으로 한 경우에는 세탁실을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난방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평가 자료	숙박실 현황 자료, 숙박실 현장실사	

평가항목	4.1 시설관리	
평가지표	4.1.4 시설관리의 적절성 - 자가취사장 구비 및 운영	
평가방향	유스호스텔은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자가취사장 설비를 구비하고 적극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평가기간	• 2016년 현장방문 평가시	
평정 기준	# 평정기준 1	
	5점	자가취사장 구비하고 법적기준 충족
	3점	자가취사장 구비하고 있으나 관련 법적 기준에 미흡함
	0점	자가취사장이 없음
	# 평정기준 2 (집단급식소 운영의 경우 추가로 평가)	
	5점	8개 항목 해당
	4점	5~7개 항목 해당
	3점	3~4개 항목 해당
	2점	2개 항목 해당
	1점	1개 항목 이하 해당
	※ 두 평정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중 낮은 점수 부여. (법적기준으로는 자가취사장만 필요하나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경우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	
평가 요소	- 평정기준 2에 의한 각 요소별로 만족 여부를 O . X 로 평가	
	요소항목	O . X 여부
	1) 집단급식소 신고여부	
	2) 조리사 채용 여부	
	3) 영양사의 식단 확인 여부	
	4) 조리 종사원의 연1회 이상 건강진단 실시여부	
	5) 매월 1회 식품위생점검 실시 여부	
	6) 조리종사원 대상 식품위생교육 실시 여부	
	7) 영양사 채용여부	
	8) 영양사 연 1회 식품 위생교육여부 또는 (설치자) 연1회 식품위생교육 실시여부	
평가 내용	- 유스호스텔 자가취사장에 관한 설치기준 - 배기가 잘 되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화재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소화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급수·배수설비, 개수설비, 오물처리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 취사설비(가스레인지 또는 전열취사기구 등과 조리대 및 개수대)와 식탁·의자 및 개별취사용구·부식 등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대를 구비하여야 한다. - 숙박정원 50인당 1조 이상의 취사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그 합계가 5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조로 할 수 있다. -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집단급식소 요소 인정범위 -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을 경우,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을 경우 둘 중 1인 채용 인정(조리사 채용, 영양사 채용 모두 인정) - 조리사, 영양사 자격증 확인과 근로계약 및 4대사회보험 확인을 통해 유스호스텔의 직원일 경우 인정(계약직 인정) - 식품위생점검과 자체적으로 실시한 점검을 말하며 1개월이라도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X' 평정 - 영양사의 식품위생교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의 교육을 말함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경우 조리사를 채용한 것으로 인정 -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조리사로서 직접 음식을 조리하는 경우 조리사 채용 인정	
	※ 근거 : 식품위생법 제51조(조리사), 제52조(영양사), 제88조(집단급식소)	
	* 급식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의 평가요소에 준용하여 평가(계약서 등 확인)	
	* 일반음식점영업으로 신고·운영 시 위의 급식실 평가요소에 준용하여 평가	
	※ 자연권 시설의 현실을 고려하여 3번 평가요소 추가, 연간가동률을 감안하여 평가	
평가 자료	청소년수련시설시설별일람표, 자가취사장 이용자 현황, 자체 운영규정, 기타 관련 자료	

평가 항목	4.1 시설관리	
평가 지표	4.1.4 시설관리의 적절성 - 대화·정보실 구비 및 운영	
평가 방향	유스호스텔은 여행·문화정보를 제공하고 만남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대화·정보실을 별도 독립공간으로 구비하여야 하며 해당 공간은 본연의 기능을 잘 수행하여야 한다.	
평가 기간	• 2014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평정 기준	5점	독립적인 대화·정보실 구비되어 있고 제공 자료가 있음
	3점	독립적인 대화·정보실 구비되어 있으나 제공 자료가 없음
	0점	독립적인 대화·정보실 구비되어 있지 않음
평가 요소	• 독립적인 대화·정보실 구비 및 제공 자료	
평가 내용	• 평가방법 -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규칙 제8조의 수련시설 시설기준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 • 대화·정보실의 활용편의성 - 다양한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를 위한 인터넷 활용 등의 환경이 조성되어 있음 - 시설이 위치한 지역 내 여행·문화정보등을 제공하고 있음 - 이용 청소년들간 만남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음	
평가 자료	청소년수련시설시설별일람표, 대화·정보실 운영규정, 대화·정보실 구비 기자재 현황 등	

평가 항목	4.1 시설관리	
평가 지표	4.1.4 시설관리의 적절성 - 화장실·샤워실·세면장 운영	
평가 방향	유스호스텔은 화장실·샤워실·세면장 등을 설치하고 이용에 필요한 비품을 구비하여야 한다.	
평가 기간	• 2016년 현재	
평정 기준	매우우수(5)	평가요소 6개 항목 양호
	우 수(4)	평가요소 5개 항목 양호
	보 통(3)	평가요소 4개 항목 양호
	미 흡(2)	평가요소 3개 항목 양호
	매우미흡(1)	평가요소 2개 항목 이하 양호
평가 요소	• 각 요소별로 시행 여부를 양호 / 불량으로 판단	
	요소항목	양호/불량
	1) 화장실 청결상태	
	2) 화장실 비품 및 가구관리	
	3) 샤워실 청결상태	
	4) 샤워장 비품 및 가구관리상태	
	5) 세면장 청결상태	
	6) 세면장 비품 및 가구관리 상태	
	7) 건물 내외부 청결상태	
평가 내용	• 평가방법 -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규칙 제8조의 수련시설 시설기준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 • 수도물 외 지하수 등을 취사 및 음용에 활용하는 경우 위생확인여부 필요(수질 검사표 등) • 화장실·샤워실·세면장의 비품 구비 여부 - 화장지, 거울, 손 건조장치, 종이 타월 등의 해당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물품의 구비 여부 - 현장방문 평가 시 무작위로 선정된 객실 3개의 화장실, 샤워실, 세면장 중 하나라도 비 위생적이거나 비품 및 가구관리 상태가 작동불량, 파손, 화장지 미비치, 불편한 냄새 등이 나는 경우이면 모두 불량 - 공동화장실 및 공동샤워장은 모두 점검 - 객실 및 화장실 관리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보유여부 확인	
	○ 위생시설 설치기준 - 화장실은 수세식 또는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남·여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취사 및 음용에 공급되는 물은 상하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 보건소에서 보건위생상 해가 없다고 증명한 것이어야 한다.	
평가 자료	화장실·샤워실·세면장 등 비품 운영사항, 현장실사	

평가 항목	4.1 시설관리	
평가 지표	4.1.4 시설관리의 적절성. - 지도자실, 휴게실 설치 및 운영	
평가 방향	유스호스텔은 지도자실과 휴게실을 각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평가 기간	• 2014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평정 기준	5점	모두 준수
	0점	1개라도 미준수
평가 요소	• 각 요소별 해당 여부를 O . X 로 판단	
	요소항목	O . X 여부
	1) 독립적인 지도자실 설치	
	2) 독립적인 휴게실 설치	
평가 내용	• 평가방법 -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규칙 제8조의 수련시설 시설기준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 • 고려 사항 - 이용자들의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의자 및 탁자를 갖추어야 함 - 청소년지도자들이 활동지도 등을 위한 준비실로 사용하는 실내 공간으로 이에 필요한 관련 기구와 비품을 갖추어야 함	
평가 자료	시설일람표, 시설 층별 평면도	

평가 항목	4.2 시설 운영 관리	
평가 지표	4.2.1 시설 운영기준 준수	
평가 방향	유스호스텔은 등록증 게시, 정원표시, 방별 투숙기록 등을 운영기준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평가 기간	• 2014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평정 기준	5점	모두 준수
	3점	3개 준수
	1점	2개 이하 준수
평가 요소	• 각 요소별 해당 여부를 O . X 로 판단	
	요소항목	O . X 여부
	1) 수련시설등록증을 게시하고 있다.	
	2) 숙박실별 정원을 표시하고 있다	
	3) 일별·방별 숙박인원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있다.	
	4) 개별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평가 내용	• 평가방법 -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규칙 제9조의 수련시설 운영기준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 • 고려 사항 - 수련시설등록증을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함 - 숙박실별로 당해 숙박실의 숙박정원을 표시하여야 함 - 방별 숙박을 이용한 인원에 대하여 기록하여야 함 ※ 평정기준 수정 및 평가요소 4)번 추가	
평가 자료	시설운영계획, 수련시설등록증, 기타 증빙자료 - 개인이용자 숙박 미허용 (평가기간 중 개인이용실적 확인)	

평가 항목	4.2 시설 운영 관리	
평가 지표	4.2.2 생활지도 기준 준수	
평가 방향	유스호스텔은 이용자에 대한 적절한 생활지도를 통하여 이용청소년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하여야 한다.	
평가 기간	• 2014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평정 기준	5점	생활지도 운영기준을 구비되어 있고 기준이 세부적임
	4점	생활지도 운영기준을 구비되어 있으나 세부적이지 않음
	0점	생활지도 운영기준을 구비되어 있지 않음
평가 요소	• 생활지도 운영기준	
평가 내용	• 평가방법 -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규칙 제9조의 수련시설 운영기준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 • 고려 사항 - 23시 이전에 취침하도록 하여야 하며, 취침시간 후에는 취침을 방해하는 행위가 없도록 하여야 함 - 청소년의 남녀 혼숙을 금하는 조치를 하여야 함 -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음주·흡연행위를 금하여야 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음주자 등 시설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함 - 시설 이용 청소년의 탈선을 방지하고 타인으로부터의 위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	
평가 자료	유스호스텔 이용수칙 및 안내문, 기타 증빙자료	

평가 항목	4.2 시설 운영 관리	
평가 지표	4.2.3 숙박정원 기준 준수 여부	
평가 방향	유스호스텔은 수련시설등록증 상에 표기된 숙박정원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평가 기간	• 2014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평정 기준	5점	숙박기준 준수
	0점	숙박기준 미준수
평가 요소	• 특정 기간을 선정하여 체결된 계약서 내용과 숙박정원 비교 • 숙박정원을 초과하여 운영된 경우는 0점 처리	
평가 내용	• 평가방법 -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규칙 제9조의 수련시설 운영기준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 • 고려 사항 - 숙박정원을 초과하거나 숙박실의 수용능력을 초과하여 숙박하게 하여서는 안됨	
평가 자료	수련시설등록증, 시설운영 및 이용현황 자료, 이용현황자료에 대한 세부근거자료 확인	

평가 항목	4.3 안전 및 위생관리	
평가 지표	4.3.1 안전관리계획 수립의 적절성	
평가 방향	유스호스텔은 시설물 및 환경에 내재된 위험요인을 미리 점검 및 평가하여 위해요소로부터 인명 및 재산 보호와 안전관리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평가 기간	• 2015년 12월 31일 이전	
평정 기준	5점	6개 항목 이상 해당
	4점	5개 항목 해당
	3점	4개 항목 해당
	2점	3개 항목 이하 해당
	1점	안전관리계획서 미수립
평가 요소	• 각 요소별로 시행 여부를 ○ . X 로 판단	
	요소항목	○ . X 여부
	1) 안전관리 적용범위를 지정하였다.	
	2) 안전관리자를 선정하였다.	
	3) 안전관리 업무분담 하였다.	
	4) 위해 시설물 발견 시 대처방안을 마련하였다.	
	5) 사고발생 시 비상처리체계를 구축하였다.	
	6) 안전관리교육 계획 및 내용이 포함되었다.	
	7) 시설별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었다.	
평가 내용	• 평가방법 -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하여 내용의 현실성과 체계성 등을 확인하여 평가함 • 요소항목별 적용범주 및 기준 - 안전관리 대상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시설 모두이며 적용대상 시설물에 대한 현황이 파악되어야 함 - 안전관리 총괄 책임자, 시설별 안전관리 책임자, 시설별 안전관리자를 선정하여야 함 - 안전관리자별 주요업무내용 및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여야 함 - 위해 시설물 발견 시 보고처리 방법, 조치방법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함. - 안전사고 발생 시 종사자 비상망의 작성, 및 훈련, 외부 기관(소방서, 경찰서, 병원 등) 연계를 통한 비상처리체계 구축과 응급처치방법 등을 작성하여야 함. - 종류 및 유형별, 담당자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가스, 전기, 난방, 변전시설, 위험물 저장시설, 소방시설, 승강기, 건축, 토목, 기계, 활동시설 등 각 시설별 안전점검 내용, 방법, 기준, 일정, 보수방안 등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평가 자료	안전관리계획서	

평가 항목	4.3 안전 및 위생관리	
평가 지표	4.3.2 자체 안전점검 실시 및 지방자치단체장 보고	
평가 방향	유스호스텔은 청소년들의 정신적 건강과 쾌적한 숙박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평가 기간	• 2014년 1월 ~ 2016년 현장평가 시점	
평정 기준	5점	자체 안전점검 실시와 지자체 보고
	3점	자체 안전점검 실시 후 지자체 미보고
	0점	자체 안전점검 미실시
평가 요소	• 자체 안전점검 실시여부와 지방자치단체 보고여부	
평가 내용	• 평가방법 - 자체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을 실시여부와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여부를 평가함 • 인정범위 - 공식문서로 지방자치단체에 보고된 것 인정(필요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확인) ※ 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8조(수련시설의 안전점검)	
평가 자료	안전점검대장, 안전점검표, 안전점검결과보고 발신 공문서 등	

평가 항목	4.3 안전 및 위생관리	
평가 지표	4.3.3 시설배상책임보험 가입	
평가 방향	유스호스텔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규정에 의거 시설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평가 기간	• 2016년 현장평가 방문 시	
평정 기준	5점	시설배상책임보험 가입
	0점	시설배상책임보험 미가입
평가 요소	• 시설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평가 내용	• 평가방법 - 청소년활동진흥법 규정에 의한 시설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 - 보험가입증명서 내용확인 사항 ； 보상한도액 대인 8천만 원 이상, 1사고 당 무한대 * <u>1사고 당 한도액을 정하였을 경우 0점 평정</u> ； 담보내역 및 가입기간 확인(현재 기준으로 보험가입기간이 지났을 경우 불인정) * 담보내역은 허가·등록한 시설의 건물, 부지, 특성화 시설 등 모두 포함되어야 함 - 영업책임보상보험, 여행자보험, 화재보험, 가스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은 시설배상책임보험과 별개임 ※ 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5조(보험가입)	
평가 자료	보험가입증명서 및 약관 등	

평가 항목	4.3 안전 및 위생관리		
평가 지표	4.3.4 시설 청결도 및 위생 상태		
평가 방향	유스호스텔은 관리운영 매뉴얼을 갖추고 이용자가 바뀔 때마다 침구세트를 교체하여 청결도를 유지토록하고, 조리실과 식당, 화장실 등에 대한 위생관리를 하여야 한다.		
평가 기간	• 2014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평정 기준	• 점수범위 0점 ~ 5점		
평가 요소	• 각 요소별 평정		
	요소	판정 기준	
	1) 숙박실의 청결상태	1점	청결도 유지를 위한 관리운영매뉴얼 없음
		2점	관리운영매뉴얼에 따른 적정 운영
	2) 화장실·세면장의 청결상태	0점	청결도 유지를 위한 관리운영매뉴얼 없음
		1점	관리운영매뉴얼에 따른 적정 운영
	3) 조리실 및 식당의 위생상태	1점	위생관리를 위한 관리운영매뉴얼 없음
		2점	관리운영매뉴얼에 따른 적정 운영
평가 내용	• 주요 고려 사항 - 침구세트(침대시트 또는 이불 및 베개 커버) 및 숙소의 청소 상태가 이용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함. 침구세트 청결 및 세탁 등에 대한 자체관리점검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 조리실과 식당의 위생상태(배수구 덮개, 폐기물 용기, 조리기구 및 식기소독 장비, 환기시설, 냉장 및 냉동시설 구비 여부, 바닥·벽·천장 등의 청소 상태, 조리자의 위생복·위생모·장갑 착용 여부 및 청결도) - 화장실·세면장·샤워실의 운영관리에 있어서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주기적 관리 및 교체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게 관리되어야 함 ※ 점수배점을 4->5점으로 상향조정		
평가 자료	- 관리매뉴얼 및 점검 시스템		

5	종합평가
----------	-------------

평가 항목	5.1 종합평가	
평가 지표	5.1.1 전반적인 발전 노력 수준	
평가 방향	유스호스텔은 시설장과 전 직원의 참여를 바탕으로 시설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평가 기간	2016년 현장평가 시점	
평정 기준	매우우수(5.0)	시설 발전을 위한 노력이 매우 높음
	우 수(4.5)	시설 발전을 위한 노력이 높음
	양 호(4.0)	시설 발전을 위한 노력이 있음
	보 통(3.5)	시설 발전을 위한 관심이 있음
	부 족(3.0)	시설 발전을 위한 관심이 없음
평가 요소	- 최근 3년간 운영개선노력 실적자료 검토 및 현장방문평가 시 시설 운영대표자 및 종사자들과의 인터뷰 등으로 판단함 - 시설장으로서 장기적인 발전에 대한 목표와 방향 - 직원의 직무환경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	
평가 내용	- 평가방법 - 면담과 인터뷰 등을 통해 시설장으로서의 가치, 목표, 관심, 노력의 정도를 전반적인 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정함. - 시설 종사자들의 시설 운영에 대한 관심과 노력, 발전에 대한 의지를 종합적으로 평가 - 구체적인 실적 자료를 토대로 하며 앞의 평가지표에서 확인하지 못한 평가요소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장점 및 발전사항을 집중적으로 조사함 * 실적자료 : 예산, 지도인력, 청소년이용도, 프로그램 운영역량 등 실적 - 현재의 수준에 대한 시설 간 비교 보다는 각 시설의 여건과 한계를 고려하여 3년간 개선을 위한 노력의 정도를 중심으로 평가함 * 중장기계획의 연도별 추진목표 및 계획을 참조하여 개선-발전 노력을 확인 * 연간 기관 평가 또는 사업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개선-발전 노력을 확인 - 평가 시 고려사항 (가산점 인정 대상) - 이용 청소년에 대한 시설의 관심과 지원, 존중의 태도와 수준 - 직원 대상 복지 지원 측면에서 직원 및 배치지도사 등에 대한 교육·복지지원 여부 등을 고려하여 노력 여부 평가 - 지역사회 및 유스호스텔 연맹과의 연계를 위한 노력여부 평가 - 기타 발전노력과 관련된 사항(관련 실적 자료 확인) - 기관 대상 외부(정부, 지자체, 유관기관 등) 포상실적 여부 - 시설유지보수 및 기능보강비 등의 시설투자 한 실적과 기타 발전노력이 있을 경우 가점(관련 실적 자료 확인) * 추가사항 (가점 인정 대상) - 시설규칙 시행기준에 의거해 실내집회장 및 야외집회장을 설치, 운영하고 관리 감독 수준이 양호한 수준일 경우 ※ 정성지표의 경우 평가위원들의 편차를 조정하기 위해 기본점수 3점 부여, 평정기준 수정	
평가 자료	방문 평가 시 시설 종사자들과의 면담 및 인터뷰, 발전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자료	

평가 항목	5.1 종합평가
평가 지표	5.1.2 종합평가
평가 방향	유스호스텔은 청소년정책에 따라 관련 법적 규정을 근거로 설립된 청소년전용시설로서 청소년정책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해 정책지침에 협력해야 한다.
평가 기간	• 2014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평정 기준	• 평가위원 간 합의하여 평정 • 점수범위 : 3점 ~ 5점 (기본점수 3점 부여)
평가 요소	• 청소년정책 협력 수준 • 기타 운영여건 및 환경과 평가의 준비 및 참여도를 고려한 평가위원 재량평가
평가 내용	• 가점사항 -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수련원의 입지적 여건으로 인해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할 경우 - 전반적으로 시설운영·여건과 평가준비 및 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 재량 • 감점사항 - 유스호스텔의 명칭 : 표현상 유스호스텔이 아닌 것으로 오해소지의 명칭(예; 콘도 혹은 리조트 등) 사용 시 - 시설운영에 따른 감사 지적 등 운영의 부적절 사례 - 평가준비 및 참여도 등이 부실한 경우 평가위원 재량 • 기타사항 - 운영의 우수사례 및 평가지표에 반영하기 어려운 실적 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 재량 평정 • 추가사항 - 수련시설(자연권)을 청소년단체가 아닌 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한 경우 감점사유 - 평가대상기간(2년 기준) 동안 인명 및 성폭력(성추행) 사고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시설의 경우 평가등급을 미흡이하로 하향조정(현행 감점 적용)하며, 2016년도 평가완료 이후에도 유사 사건이 발생 할 경우에도 이를 적용함. ※ 정성지표의 경우 평가위원들의 편차를 조정하기 위해 기본점수 3점 부여
평가 자료	청소년운영위원회 구성·운영실적 등

4. 2016년 청소년야영장 종합평가 지표

1) 지표체계 : 4개 영역 - 7개 항목 - 20개 평가지표

2) 배점기준 : 총점 100점 만점

평가 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항목	배점	평가지표	평점 만점	법정 기준
1. 청소년 및 프로그램 (8점)	1-1. 청소년이용실적	3	1.1.1 전체 이용자 대비 청소년 이용률	5→3	
	1-2. 프로그램	5	1.2.1 청소년 이용가능 프로그램	5	
2. 조직 및 인력 (17점)	2-1. 조직운영	6	2.1.1 시설발전계획	3	
	2-2. 인력구성	11	2.1.2 시설홍보수준	3	
			2.2.1 청소년지도자 배치 법정기준 준수	3→5	0
			2.2.2 운영대표자의 자격기준 준수	3	0
3. 시설 및 안전 (65점)	3-1. 시설 및 설비 수준	17	2.2.3 지도자의 윤리성	3	0
			3.1.1 연간 시설 가동률	2	
			3.1.2 활동시설 설치여부	5	0
			3.1.3 자가 취사장 구비여부 및 실태	5	0
	3-2. 안전 및 위생 관리	48	3.1.4 화장실 및 세면장 시설의 관리상태	5	0
			3.2.1 대피시설 설치여부	6	0
			3.2.2 비상설비 설치여부	6	0
			3.2.3 긴급 상황 대처 매뉴얼 구비 여부	6	
			3.2.4 응급처치 설비 구비여부	6	
			3.2.5 긴급후송대책 구축 여부	6	
			3.2.6 시설 안전 관련 보험 가입 여부	6	0
			3.2.7 안전교육 실시 여부	6	
			3.2.8 시설 위생 및 청결상태	6	
4. 종합평가 (10점)	4.1 종합평가	10	4.1.1 전반적인 발전노력 수준	10	
총 100점					

※ 진한 글씨(붉은색)로 표기된 내용은 2014년 대비 수정된 사항임.

3) 청소년야영장 평가지표별 평가방향 및 기준

1	청소년 및 프로그램										
평가 항목	1.1 청소년이용실적										
평가 지표	1.1.1 전체이용자 대비 청소년 이용률										
평가 기준	연간 전체 이용자 대비 청소년이용자수 비율을 높게 유지하고 있는가?										
평가 기간	• 2014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점수 범위	<table> <tr> <td>매우우수(5)</td><td>70% 이상</td></tr> <tr> <td>우 수(4)</td><td>60% ~ 69%</td></tr> <tr> <td>보 통(3)</td><td>50% ~ 59%</td></tr> <tr> <td>미 흡(2)</td><td>40% ~ 49%</td></tr> <tr> <td>매우미흡(1)</td><td>40% 미만</td></tr> </table>	매우우수(5)	70% 이상	우 수(4)	60% ~ 69%	보 통(3)	50% ~ 59%	미 흡(2)	40% ~ 49%	매우미흡(1)	40% 미만
매우우수(5)	70% 이상										
우 수(4)	60% ~ 69%										
보 통(3)	50% ~ 59%										
미 흡(2)	40% ~ 49%										
매우미흡(1)	40% 미만										
평가 요소 (산출 근거)	$\frac{2014\sim 2015\text{년 연간 청소년이용자 수()명}}{2014\sim 2015\text{년 연간 전체이용자 수()명}} \times 100 = [\quad \%]$										
조사 자료	• 평가의 중점 사항 - 청소년야영장 공간 내 이용자 현황이 관리되는 시설 부지 내 전체 공간 대상으로 시설 공간·대관, 활동프로그램 참가에 따른 이용을 기준으로 이용률을 산정함 - 청소년야영장에서 지자체에 제출하는 공식적인 이용 인원 현황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일별 인원현황 관리 자료를 근거로 보고되는 공식 자료를 평가 자료로 활용함) • 이용자의 범위 - 이용자 범위 : 유아에서 성인에 이르는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함. 단, 가족이 청소년과 함께 이용한 경우 그 가족의 수는 연간 숙박자수에 산입하지 않음 - 청소년 범위 : 청소년기본법 상에 정의된 9세 이상 24세 이하(대학생 포함) - 주체별 범위 : 청소년야영장 자체 운영 외에 외부 단체 대관에 의한 이용 인원도 포함 - 총 이용자 수 산정 : 숙박일 × 이용자 수로 계산함(숙박정원만 산정) - 산정의 예 : 2014년 1월 1일 ~ 1월 3일까지 2박3일 방문한 중학교학생 200명이고, 2014년 1월 3일 ~ 1월 5일까지 2박3일 방문한 중학교학생 100명인 경우, 200명 × 2박 + 100명 × 2박 = 총 숙박자 수 =400명 • 평가위원은 현장방문 평가 시 특정 기간(특정 월 등)을 선정하여 실제 이용인원을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나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서면조사표와 차이가 있을 경우 평가점수에서 2점 감점 처리할 수 있음 • 시설 운영 및 이용현황자료(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에 따른 별지 제11호 서식 ‘청소년시설 운영현황’ 문서) ※ 세월호, 메르스로 인한 청소년이용자의 대폭감소로 인해 점수배점을 5점→3점으로 하향 조정 • 관련 규정 - 시설을 청소년활동 이외에 이용할 수 있는 범위기준(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 수련시설을 이용한 청소년 외의 연간이용자가 그 수련시설 연간이용가능인원수의 40/100 이내이어야 함										

평가 항목	1.2 프로그램
평가 지표	1.1.2 청소년 이용가능 프로그램
평가 기준	야영장 인근 자연환경 및 시설을 활용하여 청소년들이 참여할 프로그램이 있는가?
평가 기간	• 2014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점수 범위	- 매우 우수(5) : 운영가능한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수준이 우수함 - 우수(4) : 청소년활동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음 - 미흡(3) : 청소년활동에 적합한 프로그램이 전혀 없음
평가 요소 (산출 근거)	청소년활동에 적합한 프로그램 존재 여부 및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조사 자료	• 프로그램 운영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운영 매뉴얼 및 활동지도안이 있는 경우만 실적으로 인정(예시: 등산, 오리엔티어링, 래프팅, 카누, 수영 등)

평가 항목	2.1 조직운영																						
평가 지표	2.1.1 시설발전계획																						
평가 기준	설립목적에 맞는 시설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는가?																						
평가 기간	• 계획의 대상기간 : 2015년 12월 기준 최근(5년 내)에 수립된 계획서																						
평정 기준	• 평점점수 : ()점(최대3점~최하0점)																						
평가 요소	<table border="1"> <thead> <tr> <th>요소</th><th colspan="2">평정 기준</th><th>○ 판정시 배점</th></tr> </thead> <tbody> <tr> <td>1) 기관 발전계획을 수립·보유하고 있다</td><td>X</td><td>○</td><td>1</td></tr> <tr> <td>2) 예산계획이 수립되어 있다.</td><td>X</td><td>○</td><td>1</td></tr> <tr> <td>3) 연도별 추진 일정을 수립하고 있다</td><td>X</td><td>○</td><td>1</td></tr> <tr> <td colspan="3">합계</td><td></td></tr> </tbody> </table>			요소	평정 기준		○ 판정시 배점	1) 기관 발전계획을 수립·보유하고 있다	X	○	1	2) 예산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X	○	1	3) 연도별 추진 일정을 수립하고 있다	X	○	1	합계			
요소	평정 기준		○ 판정시 배점																				
1) 기관 발전계획을 수립·보유하고 있다	X	○	1																				
2) 예산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X	○	1																				
3) 연도별 추진 일정을 수립하고 있다	X	○	1																				
합계																							
평가 내용	• 평가의 중점 사항 - 시설 발전계획은 장기적인 발전목표를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계획을 추진하는지 종합적 관점에서 평가함 - 청소년야영장의 설립 취지에 따른 정체성 및 기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중심으로 평가함 ※ 어떤 형태나 수준이든지 인정하고 요소별 평가 • 시설발전계획의 개념 - 청소년야영장 운영을 위한 목표나 방향, 사업 및 기관 경영 등 분야별 추진계획을 문서화한 것을 의미함 - 시설별 운영기반과 지역사회 및 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성취하려는 목표와 전략, 분야별 계획, 단계별 추진방안을 포함하여 작성함 • 평가 자료의 범위 - 공식적인 내부결재 또는 공식 발표 등 해당 청소년야영장의 발전계획으로 인정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친 공식 계획서를 평가 대상으로 함. - 수립 시점 및 적용기간의 범위 : 2015년 12월 이전에 수립된 계획서를 기준으로 함. * 단, 발전계획 기간이 2015년 12월로 종료되어 2016년 이후 기간을 대상으로 새로운 발전계획을 수립한 경우 평가 자료로 인정 가능 - 평가 대상 기간 중 위탁기관이 변경된 경우는 변경된 기관의 계획서로 평가 가능 - 위탁시설의 경우 수탁제안서에 포함된 중장기발전계획도 인정 - 직영시설의 경우 지자체 자체의 정책계획과 별도로 해당 시설별로 수립된 독립적인 발전계획서를 평가의 대상으로 함																						
조사 자료	• 연간사업계획서, 중장기계획서, 경영목표, 각종 경영혁신 관련 추진실적 자료 등																						

평가 항목	2.1 조직운영	
평가 지표	2.1.2 시설홍보수준	
평가 기준	시설홍보를 위해 다양한 홍보자료를 생산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성화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수행하고 있는가?	
평가 기간	• 2014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점수 범위	우수(3)	2가지 이상 홍보자료가 있음
	보통(2)	1가지 홍보자료가 있음
	미흡(1)	홍보자료가 없음
평가 요소 (산출 근거)	홍보자료 생산 및 활동정도(언론보도, 리플렛, 카달로그, 포스터, CD 등) 홈페이지 구축·운영 현황, 관광안내 책자나 관광 지도에 해당 시설의 소재 명시 여부	
조사 자료	• 각종 홍보자료(언론보도, 리플렛, 포스터, CD 등), 홈페이지(게시판, 공지사항 등) 실적, 관련 관광 책자나 지도 등	

평가 항목	2.2 인력 구성	
평가 지표	2.2.1 청소년지도사 배치 법정기준 준수	
평가 기준	청소년지도자 배치에 대한 법정기준을 준수하고 있는가?	
평가 기간	• 2016년 현장평가 방문시	
점수 범위	우수(5)	법정기준 준수
	미흡(0)	법정기준 미준수
평가 요소 (산출 근거)	청소년지도자 배치 법정기준 준수여부 (3급지도사 1명)	
조사 자료	- 적용범위 1급, 2급,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정규직원을 말함(계약직 제외) - 자격등급별로 복수의 자격증을 가진 경우 1개로 환산하여 적용함(사람 기준) - 상위 등급 인원 확보 시 하위등급의 인원을 확보하지 않아도 됨 -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사본, 급여대장, 4대보험 가입서류, 직원명부 등) ※ 법적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3->5점으로 상향조정 - 관련규정 - 청소년지도사 배치대상 및 기준(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5조 2항 관련 별표 5) 청소년지도사를 1인 이상 둔다. 다만 설치·운영자가 동일 시·도안에 다른 수련시설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야영장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다른 수련시설에 청소년지도사를 둔 때에는 그 청소년야영장에 청소년지도사를 별도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야영장으로 청소년수련거리의 실시 없이 이용의 편의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평가 항목	2.2 인력 구성	
평가 지표	2.2.2 운영대표자의 자격기준 준수	
평가 기준	자격을 갖춘 운영대표자가 시설장으로서 공식적 직위와 권한을 갖고 시설 운영에 대한 책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평가 기간	• 2014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점수 범위	3	운영대표자의 자격이 법적 기준을 준수하며 상근
	1.5	운영대표자의 법적 기준 부분 준수
	0	운영대표자의 자격이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상근하지 않음
평가 요소 (산 출 근 거)	•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증 상의 운영대표자와 시설장의 일치여부 • 운영대표자의 법적 자격기준 준수 및 상근여부 • 청소년야영장 직제규정의 시설장의 성명(공식 명칭 기준 : 시설장, 관장 등) • 업무의 최종결재권자의 성명(내부결재 기준 : 시설장 직위 여부)	
조사 자료	•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증, 청소년야영장 직제규정(조직도), 내부결재 문서 [참고사항] - 2013년 여성가족부 지침 : 설치·운영자 및 운영대표자의 구분 * 설치·운영자(대표자) : 건물주 * 운영대표자 : 원장, 관장 등 시설의 대표(시설의 장) * 지방자치단체장은 운영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에 운영대표자 등록 시 시설장이 아닌 시설 종사자 1인을 운영대표자로 등록할 수 없음 (운영대표자=시설장) * 법적 기준은 미흡하지만 대리인(예:부장)이 실제적인 결재권을 가진 경우 운영대표자로 부분 인정 • 평가방법 1) 운영대표자의 법적 자격기준 준수 및 상근 의무 - 운영대표자(시설장)은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운영대표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상근 2) 운영대표자와 시설장의 일치여부 -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증 상의 운영대표자 성명, 청소년야영장 직제규정의 시설장의 성명(공식 명칭 기준: 관장, 원장 등), 업무의 결재권자(내부결재 기준: 시설장 직위 여부)의 성명이 모두 같아야 함 * 청소년야영장 내 타 기관 입주기관의 기관장의 결재라인에 포함 시 불인정 * 객관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할 경우(직원 및 배치지도사) 불인정 ※ 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지침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8조(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의 자격)에 의거해 판단함 1. 1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2.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청소년육성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7. 제6호 외의 공무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평가 항목	2.2 인력 구성	
평가 지표	2.2.3 지도자의 윤리성	
평가 기준	직원채용 시 청소년육성업무 종사자로서 필요한 법적 윤리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평가 기간	• 2016년 현장평가 방문시	
점수 범위	우수(3)	직원대상 성범죄 경력 확인 및 연 1회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미흡(0)	평가요소 두 가지 중 한 가지라도 이행하지 못함
평가 요소 (산출 근거)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원의 성범죄 경력 확인 여부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연 1회 이상 직원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	
조사 자료	• 연간 직원의 성희롱 예방교육 계획서, 성희롱예방교육일지 등 관련 문서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 자체교육을 모두 포함) • 전체 직원 대상 성범죄 경력 확인서 ※ 성범죄 경력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혹은 다문화 인력의 경우 이를 감안하여 평가 • 관련규정 ※ 근거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 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3	시설 및 안전
----------	----------------

평가 항목	3.1 시설 및 설비 수준	
평가 지표	3.1.1 연간 시설 가동률	
평가 기준	시설의 연간 서비스제공 비율이 높은가?	
평가 기간	2014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점수 범위	3점	85% 초과
	2.5점	75% 초과 ~ 85% 이하
	2점	65% 초과 ~ 75% 이하
	1.5점	55% 초과 ~ 65% 이하
	1점	55% 이하
평가 요소 (산출 근거)	2014년 가동일수 270 $\times 100 = [\quad \%]$ 2015년 가동일수 270 $\times 100 = [\quad \%]$ - 동계 3개월 제외한 이용일 수, 가동일 수의 경우 이용자가 1명이라도 있는 경우 가동일로 산정 - 시설 개·보수 등 불가피한 사유로 휴관한 경우 해당 휴관일 수만큼 분모에서 차감 - 휴관일 수는 공식 문서를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조사 자료	시설 운영 및 이용현황자료(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에 따른 별지 제11호 서식 ‘청소년시설 운영현황’ 문서)	

평가 항목	3.1 시설 및 설비 수준	
평가 지표	3.1.2 활동시설 설치	
평가 기준	• 다양한 실외활동시설이 설치되어 있는가?	
평가 기간	• 2014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점수 범위	우수(5)	야외집회장 및 체육활동장 외에 추가 활용 가능한 활동시설이 1개 이상 설치되어 있음
	보통(4)	야외집회장 및 체육활동장만 설치되어 있음
	미흡(3)	야외집회장 및 체육활동장이 없음
평가 요소 (산출 근거)	• 추가활동시설 설치현황(자연체험시설, 수영장, 챌린지 코스 등의 시설)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2	
조사 자료	• 현장 실사, 시설관리대장 등	

평가 항목	3.1 시설 및 설비 수준							
평가 지표	3.1.3 자가취사장 구비여부 및 실태							
평가 기준	•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자가취사장 설비를 구비하고 있는가?							
평가 기간	• 2014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점수 범위	<table><tr><td>5점</td><td>자가취사장 구비하고 법적기준 충족</td></tr><tr><td>3점</td><td>자가취사장 구비하고 있으나 관련 법적 기준에 미흡함</td></tr><tr><td>0점</td><td>자가취사장이 없음</td></tr></table>		5점	자가취사장 구비하고 법적기준 충족	3점	자가취사장 구비하고 있으나 관련 법적 기준에 미흡함	0점	자가취사장이 없음
5점	자가취사장 구비하고 법적기준 충족							
3점	자가취사장 구비하고 있으나 관련 법적 기준에 미흡함							
0점	자가취사장이 없음							
평가 요소 (산출 근거)	• 자가 취사장 구비 여부 및 시설 실태 현장실사							
조사 자료	• 자가 취사장의 시설 설비가 법적 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 확인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 ‘수련시설의 시설기준’(제8조 관련) ○ 자가 취사장 시설·설비 기준 - 배기가 잘 되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화재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소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급수·배수설비, 개수설비, 오물처리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평가 항목	3.1 시설 및 설비 수준	
평가 지표	3.1.4 화장실 및 세면장 시설의 관리 상태	
평가 기준	•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화장실 및 세면장 시설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가?	
평가 기간	• 2014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점수 범위	5점	화장실, 세면장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비품 구비
	3점	화장실, 세면장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비품 미비
	0점	화장실, 세면장 시설 중 하나라도 미설치
평가 요소 (산출 근거)	• 화장실 및 세면장 관리 실태 현장 실사	
조사 자료	• 화장실의 경우 남, 여 구분이 되어 있는지 확인 • 수도물 외 지하수 등을 취사 및 음용에 활용하는 경우 위생확인여부 필요 (수질 검사표 등)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 ‘수련시설의 시설기준’(제8조 관련) ○ 위생시설 설치기준 - 화장실은 수세식 또는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남·여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취사 및 음용에 공급되는 물은 상하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 보건소에서 보건위생상 해가 없다고 증명한 것이어야 한다.	

평가 항목	3.2 안전 및 위생관리	
평가 지표	3.2.1 대피시설 설치 상태	
평가 기준	• 폭우·폭설 등 급작스러운 재해에 대비하여 대피시설이 설치되어 있는가?	
평가 기간	• 2014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점수 범위	우수(6)	대피시설이 있으며 법적 기준에 적합함
	보통(4)	대피시설이 있으나 형식적임
	미흡(0)	대피시설이 없음
평가 요소 (산출 근거)	• 대피시설 설치 및 법적 기준 준수 여부	
조사 자료	• 시설현황자료 및 현장실사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 ‘수련시설의 시설기준’(제8조 관련) ○ 야영장 ‘대피시설’의 설치 기준 - 폭우·폭설 등 급작스런 재해에 대비하여 대피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다만, 다른 용도의 시설이 있어 이를 대피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에는 별도의 대피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대피시설의 구조는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평가 항목	3.2 안전 및 위생관리	
평가 지표	3.2.2 비상설비 설치 상태	
평가 기준	비상시 야영지에서 대피시설까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비상조명설비 또는 비상통신수단을 갖추고 있는가?	
평가 기간	2014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점수 범위	우수(6)	비상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제대로 작동함
	보통(4)	비상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나 일부 작동상태가 불량함
	미흡(0)	비상설비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음
평가 요소 (산출 근거)	비상설비(비상조명설비, 비상통신수단, 위험표지물 등) 설치 여부	
조사 자료	- 시설현황자료 및 현장실사 - 비상조명설비, 비상통신수단의 작동유무 확인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 ‘수련시설의 시설기준’(제8조 관련) - 야영장 ‘비상설비’ 설치 기준 - 비상시 야영지에서 대피시설까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비상조명설비 또는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 야영지에서 대피시설 또는 관리사무소에 연락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평가 항목	3.2 안전 및 위생관리	
평가 지표	3.2.3 긴급 상황 대비 상태	
평가 기준	• 시설이용방법, 이용 시 유의사항, 대피시설 위치 및 비상시의 대피경로 등이 안내되어 있는 매뉴얼이나 안내문을 구비하고,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고 있는가?	
평가 기간	• 2014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점수 범위	우수(6)	매뉴얼이나 안내문을 갖추고 있으며 인식하기 쉽고 활용도가 높음
	보통(4)	매뉴얼이나 안내문을 갖추고 있으나 인식하기 어렵거나 활용도가 낮음
	미흡(0)	매뉴얼이나 안내문 없음
평가 요소 (산출 근거)	• 긴급 상황 대처 매뉴얼이나 안내문 구비 및 게시 여부 • 긴급 상황 대처 매뉴얼이나 안내문 관리 및 보관 상태	
조사 자료	• 관련 매뉴얼, 현장실사를 통한 안내문 게시 여부 확인	

평가 항목	3.2 안전 및 위생관리	
평가 지표	3.2.4 응급처치 설비 구비 여부	
평가 기준	• 응급환자에 대하여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구호설비·기구와 비상연락 장치를 갖추고 있는가?	
평가 기간	• 2014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점수 범위	우수(6)	응급처치를 위한 구호설비 및 기구를 갖추고 있으며 관리 상태 양호
	보통(4)	응급처치를 위한 구호설비 및 기구를 갖추고 있으나 관리 상태 미흡
	미흡(0)	응급처치를 위한 구호설비 및 기구가 없음
평가 요소 (산출 근거)	• 응급처치를 위한 구호설비·기구의 비치 여부 및 관리 상태	
조사 자료	• 시설현황자료, 시설물안전점검 기록대장, 현장실사	

평가 항목	3.2 안전 및 위생관리	
평가 지표	3.2.5 긴급후송대책 구축	
평가 기준	안전사고·응급환자 발생 등에 대비하여 긴급 후송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평가 기간	2014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점수 범위	6점	후송차량과 지정병원이 정해져 있음
	4점	후송차량과 지정병원 중 하나만 정해져 있음
	0점	후송차량과 지정병원 모두 정해져 있지 않음
평가 요소 (산출 근거)	안전사고·응급환자 발생 시 긴급 후송대책 마련 여부(지정병원 및 후송차량 유무 등)	
조사 자료	현장실사 및 긴급후송대책 매뉴얼	

평가 항목	3.2 안전 및 위생관리	
평가 지표	3.2.6 시설 안전 관련 보험 가입 여부	
평가 기준	• 시설 안전 관련 보험에 가입하여 위험상황에 대비하고 있는가?	
평가 기간	• 2014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점수 범위	우수(6)	시설배상책임보험 가입
	매우미흡(0)	시설배상책임보험 미가입
평가 요소 (산출 근거)	• 시설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수련시설 종합보험 등)	
조사 자료	• 평가방법 - 청소년활동진흥법 규정에 의한 시설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 - 보험가입증명서 내용확인 사항 ; 보상한도액 대인 8천만 원 이상, 1사고 당 무한대 * 1사고 당 한도액을 정하였을 경우 매우미흡 평정 ; 담보내역 및 가입기간 확인(현재 기준으로 보험가입기간이 지났을 경우 불인정) * 담보내역은 허가·등록한 시설의 건물, 부지, 특성화 시설 등 모두 포함되어야 함 - 영업책임보상보험, 여행자보험, 화재보험, 가스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은 시설배상책임보험과 별개임 ※ 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5조(보험가입)	

평가 항목	3.2 안전 및 위생관리	
평가 지표	3.2.7 안전교육 실시 여부	
평가 기준	• 직원과 이용자(인솔자 포함) 안전 교육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평가 기간	• 2014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점수 범위	우수(6)	안전교육 연 3회 이상
	보통(5)	안전교육 연 1~2회
	미흡(0)	안전교육 미실시
평가 요소 (산출 근거)	• 직원과 이용자(인솔자 포함) 안전교육 실시 여부	
조사 자료	• 안전교육 실적 자료(안전교육실시 기록대장), 시설물안전점검 기록대장	

평가 항목	3.2 안전 및 위생관리	
평가 지표	3.2.8 시설 위생 및 청결상태	
평가 기준	야영장 시설 및 설비를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는가?	
평가 기간	2014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점수 범위	우수(6)	매우 청결함
	보통(4)	청결함
	미흡(0)	청결하지 않음
평가 요소 (산출 근거)	야영지, 자가 취사장, 세면장의 청결도	
조사 자료	시설관리 대장, 현장실사	

평가 항목	4.1 종합평가										
평가 지표	4.1.1 전반적인 발전 노력 수준										
평가 방향	시설 운영자는 시설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는가?										
평가 기간	• 2014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기준										
평정 기준	<table border="1"> <tr> <td>매우우수(10)</td><td>시설 발전을 위한 노력이 매우 높음</td></tr> <tr> <td>우 수(9)</td><td>시설 발전을 위한 노력이 높음</td></tr> <tr> <td>양 호(8)</td><td>시설 발전을 위한 노력이 있음</td></tr> <tr> <td>보 통(7)</td><td>시설 발전을 위한 관심이 있음</td></tr> <tr> <td>부 족(6)</td><td>시설 발전을 위한 관심이 없음</td></tr> </table>	매우우수(10)	시설 발전을 위한 노력이 매우 높음	우 수(9)	시설 발전을 위한 노력이 높음	양 호(8)	시설 발전을 위한 노력이 있음	보 통(7)	시설 발전을 위한 관심이 있음	부 족(6)	시설 발전을 위한 관심이 없음
매우우수(10)	시설 발전을 위한 노력이 매우 높음										
우 수(9)	시설 발전을 위한 노력이 높음										
양 호(8)	시설 발전을 위한 노력이 있음										
보 통(7)	시설 발전을 위한 관심이 있음										
부 족(6)	시설 발전을 위한 관심이 없음										
평가 요소	• 최근 2년간 운영개선노력 실적자료 검토 및 현장방문평가 시 시설 운영대표자 및 종사자들과의 인터뷰 등으로 판단함 • 시설장으로서 장기적인 발전에 대한 목표와 방향										
평가 내용	• 평가방법 - 면담과 인터뷰 등을 통해 시설장으로서의 가치, 목표, 관심, 노력의 정도를 전반적인 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정함. - 구체적인 실적 자료를 토대로 하며 앞의 평가지표에서 확인하지 못한 평가요소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장점 및 발전사항을 집중적으로 조사함 - 현재의 수준에 대한 시설 간 비교 보다는 각 시설의 여건과 한계를 고려하여 2년간 개선을 위한 노력의 정도를 중심으로 평가함 • 평가 시 고려사항 - 이용 청소년에 대한 시설의 관심과 지원, 존중의 태도와 수준 - 정부(중앙, 지자체) 또는 민간에서 시행하는 청소년 분야 및 관련 분야의 공모사업에 대한 참여 현황을 확인하여 프로그램 개발 및 자원 다양화 부문에서 가산점 인정 - 기관 대상 외부(정부, 지자체, 유관기관 등) 포상실적 여부 - 시설유지보수 및 기능보강비 등의 시설투자 한 실적과 기타 발전노력이 있을 경우 가점(관련 실적 자료 확인) ※ 정성지표의 경우 평가위원들의 편차를 조정하기 위해 기본점수 6점 부여										
평가 자료	방문 평가 시 시설 종사자들과의 면담 및 인터뷰, 발전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자료										